

발 간 등 록 번 호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2026. 4.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5.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가상자산업감독규정
4.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5.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6.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7.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5.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02 - 2100 - 1734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 2110 - 3296

제1장 총칙 <신설 2020.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2020. 3. 24., 2020. 5. 19., 2023. 7. 18.>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거.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 5. 28., 2019. 1. 15., 2020. 3. 24., 2021. 12. 28.>

1. 제4조,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2014. 5. 28.>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 [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신설 2020. 3. 24.>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② 삭제 <2013. 8. 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3. 8. 13.>

④ 삭제 <2019. 1. 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9. 1. 15.>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 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19.]

-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9. 1. 15.>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전문개정 2011. 5. 19.]

-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3. 24.>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3. 24.>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20. 3. 24.>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5. 19.]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 가. 송금인의 성명
-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개정 2020. 3. 24.>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0. 3. 24.]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 3. 24.>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3. 24.>]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3. 24.>]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3. 24.>]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 3. 24.>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3. 24.>]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2. 12. 11., 2013. 8. 13., 2016. 3. 3., 2020. 3. 24., 2020. 5. 19., 2021. 1. 5., 2021. 12. 28.>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개정 2011. 5. 19., 2012. 12. 11.,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05. 1. 17.>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9., 2012. 12. 11., 2014. 11. 19., 2016. 3. 3., 2017. 7. 26., 2020. 5. 19., 2021. 1. 5.>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3. 8. 13.>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9., 2013. 8. 13.>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신설 2013. 8. 13.>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3. 8. 13.>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20. 5. 19.>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제목개정 2011. 5. 1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3. 24.>]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본조신설 2013. 8. 13.]

[제7조의2에서 이동 <2020. 3. 24.>]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3. 24.>]

제5장 보칙 <신설 2020. 3. 24.>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20. 3. 24.>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10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2013. 8. 13., 2020. 3. 24.>

③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2020. 3. 24.>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3. 24.>]

제12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 제9조, 제13조,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20. 3. 24.>]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 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20. 3. 2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3. 24.>]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20. 3. 24.>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3. 24.>]

제6장 감독·검사 <신설 2020. 3. 24.>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2021. 12. 28.>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 3. 21.>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3. 21., 2020. 3. 24.>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신설 2012. 3. 21., 2020. 3. 24.>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2. 3. 21.>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2. 3. 21.,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감독·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검사의 경우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9. 1. 15.]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0. 3. 24.>]

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 3. 24.>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전문개정 2011. 5. 1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3. 24.>]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24.>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3. 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 5. 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3. 24.>]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15조에서 이동 <2020. 3. 24.>]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16조에서 이동 <2020. 3. 24.>]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4. 5. 28., 2019. 1. 15., 2020. 3. 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9. 1. 15.>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1. 5. 19.]

[제17조에서 이동 <2020. 3. 24.>]

부칙 <제6516호,2001. 9. 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정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의 범위는 이 법 시행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에 한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부칙 <제7311호,2004. 1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 수산업협동조합 ” 을 “ 조합 ” 으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7336호,2005. 1. 1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 ” 으로 한다.

부칙 <제8635호, 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704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부칙 <제8863호,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 재정경제부령 ” 을 “ 총리령 ”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 “ 금융위원회 ” 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 재정경제부장관 ” 을 “ 금융위원회 ” 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항 중 “ 금융감독위원회 ” 를 각각 “ 금융위원회 ”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5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617호,2009. 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2) 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 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 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로 한다.

2@ 부터2\$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19호,2010. 1. 1.> (조세범 처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를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43호,201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2010. 5. 17.>(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22호,2011. 3. 31.>(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5. 19.>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2@ 부터2% 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694호,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부칙 <제11411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46호, 2012.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3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10호, 2014. 5. 2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같은 조 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1항제3호 중 “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을 각각 “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716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을 “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을 “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 으로 한다.

<2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071호, 2016. 3.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 ” 를 “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 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 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 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 을 “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 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133호,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2호,2016. 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 조합과 중앙회 ” 를 “ 조합과 수협은행 ” 으로 한다.

2^ 및2&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839호,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 을 각각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으로 한다.

<3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293호,2019. 1. 15.>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3호,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 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 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 ” 금융거래 “란” 을 “ ” 금융거래등 “이란” 으로, “ 금융거래를 ” 을 “ 금융거래등을 ” 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 금융거래 및 ” 을 “ 금융거래등 및 ”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 자의 금융거래 ” 를 “ 자의 금융거래등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금융거래와 ” 를 “ 금융거래등과 ” 로, “ 금융거래의 ” 를 “ 금융거래등의 ” 로, “ 금융거래나 ” 를 “ 금융거래등이나 ”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금융거래 ” 를 “ 금융거래등 ” 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를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로, “ 제4호 ” 를 “ 제5호 ” 로, “ 제5호 ” 를 “ 제6호 ” 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을 각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

부칙 <제17299호,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0호,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2호,2021.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3호,2023. 7. 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 02 - 2100 - 1734

법무부 (국제형사과) 02 - 2110 - 3296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제1조의2 삭제 <2024. 3. 26.>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2019. 2. 26., 2019. 4. 30., 2020. 8. 11., 2020. 8. 25., 2021. 3. 23., 2023. 12. 19., 2024. 3. 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 12. 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13. 8. 6.]

제3조(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 30., 2020. 8. 25.>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1. 11.]

[제목개정 2021. 3. 23.]

제4조 삭제 <2024. 3. 26.>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9. 6. 25., 2021. 3. 2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2019. 2. 26., 2021. 3. 23., 2024. 3. 26.>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1. 3. 23.>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2.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 3. 26., 2013. 11. 13., 2019. 6. 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신설 2019. 2. 26.>

제6조 삭제 <2013. 11. 13.>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10. 3. 26., 2013. 8. 6., 2013. 11. 13., 2021. 3. 23.>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 6. 25.>

③ 삭제 <2019. 6. 25.>

[제목개정 2019. 6. 25.]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

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7.,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2021. 3. 23.>

[제목개정 2021. 3. 23.]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9. 4. 30.>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21. 3. 23.>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 9. 27.]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6., 2021. 3. 23.>

[본조신설 2008. 11. 11.]

[제목개정 2013. 8. 6.]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5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23.>

1. 카지노사업자
-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전문개정 2019. 2. 26.]

제8조의5 삭제 <2019. 2. 26.>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9. 27.]

[제8조의4에서 이동 <2008. 11. 11.>]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1. 11.]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9. 6. 25.>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6. 25., 2021. 3. 23., 2021. 10. 5.>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6. 25.]

제10조 삭제 <2018. 2. 27.>

제10조의2(고객확인 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 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9. 4. 30., 2021. 3. 23.>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개정 2019. 2. 26., 2021. 3. 23.>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2019. 2. 26.>

[본조신설 2005. 9. 27.]

[제목개정 2008. 11. 11.]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11. 11., 2013. 8. 6., 2015. 12. 30., 2019. 2. 26., 2021. 3. 23.>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05. 9. 27.]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2018. 2. 27., 2019. 4. 30., 2021. 3. 23.>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 9. 27.]

[제목개정 2015. 12. 30.]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1. 10. 5.>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2.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1)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법인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본조신설 2015. 12. 30.]

[중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6(고객확인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9. 6. 25.,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 2. 27., 2019. 6. 25.>

[본조신설 2005. 9. 27.]

[제목개정 2008. 11. 11.]

[제10조의5에서 이동, 중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5. 12. 30.>]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등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거래한 경우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중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본조신설 2013. 11. 13.]

[제10조의7에서 이동, 중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와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21. 3. 23.>

1.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
2. 해지권, 해제권 또는 취소권의 행사
3.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보존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8에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2. 사업추진계획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2(신고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춘 것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26.>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3.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4(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배경
2. 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격
3. 위반행위의 효과 및 영향력
4. 법 위반상태의 시정 노력

② 법 제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명령·지시·검사·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3. 26.>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

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심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 갱신에 대한 심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5.>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본조신설 2021. 3. 23.]

제11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환정보집중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5. 9. 27., 2013. 8. 6., 2021. 3. 23., 2023. 10. 4.>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9. 27., 2008. 2. 29., 2021. 3. 23., 2025. 12. 30.>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가 허가를 하거나 세관의 장이 신고를 받은 자료
2. 「외국환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집중된 자료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로서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③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 통보시기·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4. 5., 2021. 3. 23.>

1.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 2)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 관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13. 11. 13.]

제12조(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란 범죄수익의 금액, 범죄의 종류 및 죄질, 관련자의 신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제목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3조의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3. 23.>

1. 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2.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
-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2. 27.>
 1.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2.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13.]

제13조의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27., 2021. 3. 23.>

1. 특정금융거래정보: 25년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 5년. 다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 등의 수사·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 5년
4.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그 정보등을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등의 수사·조사 등에 활용될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1. 3. 23.>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의 보존·관리·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보존·관리·폐기 현황을 매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 2021. 2. 17., 2021. 3. 23.>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4. 1. 20., 2008. 11. 11., 2013. 8. 6., 2013. 11. 13., 2018. 2. 27., 2021. 3. 23.>

1. 삭제 <2013. 8. 6.>
2. 삭제 <2013. 8. 6.>
3. 삭제 <2013. 8. 6.>
4. 삭제 <2013. 8. 6.>
5. 삭제 <2013. 8. 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서면·팩스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3., 2020. 8. 4., 2021. 1. 5., 2021. 3. 23.>

④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05. 9. 27., 2013. 11. 13., 2021. 3. 23.>

제15조(감독·검사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8. 6., 2021. 3. 23.>

②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2025. 10. 1.>

③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개정 2005. 9. 27., 2008. 2. 29., 2009. 5. 6., 2010. 11. 15.,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5. 12. 30., 2016. 3. 22.,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9. 2. 26., 2019. 4. 30., 2019. 6. 25., 2020. 8. 11., 2020. 8. 25., 2021. 3. 23., 2023. 12. 1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5. 삭제 <2017. 7. 26.>
6. 삭제 <2016. 3. 22.>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8. 6., 2015. 12. 30.>

⑤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8. 6.>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제목개정 2013. 8. 6.]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9. 2. 26., 2019. 6. 25., 2020. 8. 4., 2021. 3. 23.>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 16.]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1. 3. 23.>
[본조신설 2018. 2. 27.]

부칙 <제17416호,2001. 11. 24.>
이 영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1호,2002. 12.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3% 생략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을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228호,2004.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4호,2005.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의 특례) 금융기관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1.>

부칙 <제20653호,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4) 까지 생략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 재정경제부 장관과 ” 를 “ 기획재정부 장관과 ” 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 금융감독위원회가 ” 를 “ 금융위원회가 ”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 산업자원부장관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 을 “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4@ 부터4(까지 생략

부칙 <제20947호, 2008. 7.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 「신탁업법」 ” 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로, “ 신탁회사 ” 를 각각 “ 신탁업자 ” 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14호, 2008. 11. 11.>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3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5(제5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80호, 2009. 5.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1(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2! 및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04호, 2010.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7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317호, 2013. 1.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5호, 2013. 3. 2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 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 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칙 <제24683호, 2013.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42호, 2013. 11. 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찰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818호,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난 정보등을 2016년 6월 30일까지 법 제9조의 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38호,2016. 3. 22.>(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090호,2016. 4.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05호,2016. 5. 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및 <5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145호, 2017. 6. 2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 ” 를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 <제28152호, 2017. 6. 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 ” 를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 ” 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 ” 를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 ” 로 한다.

1& 생략

부칙 <제28218호, 2017. 7. 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국민안전처、경찰청 ”을 “ 경찰청、해양경찰청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 국민안전처장관 ”을 “ 경찰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을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을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으로, “ 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 ”을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 행정자치부장관 ”을 “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칙 <제28687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0조의4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금정보 등의 보존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단축된 정보 및 자료 중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정보 및 자료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제3조(감독、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01호, 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 제8조의5, 제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등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독、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카지노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22호,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929호,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23호,20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30893호,2020. 8.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934호, 2020. 8.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 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1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967호, 2020. 8. 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4조제2항、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 제2조제3호,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 ” 를 “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 ” 으로 한다.

부칙 <제31380호,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5호,2021. 2. 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을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으로 한다.

부칙 <제31554호,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1조의2제2호 및 제13조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관한 부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변경에 따른 고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28호,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0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제 소유자의 생년월일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조의20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3377호,2023. 4. 5.> (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부칙 <제33777호, 2023. 10.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34011호, 2023. 12. 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까지 생략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5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63호, 2024. 3.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7호, 2025. 12. 30.> (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 기획재정부장관 ” 을 “ 재정경제부장관 ” 으로 한다.

<305>부터 <313>까지 생략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4조제2항 관련)

번호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요청자료명
1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장을 말한다)	가. 「해외건설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3	관세청장	가.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4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자료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및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5	삭제 <2016.4.5.>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하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나. 삭제 <2021. 3. 23.>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
8	제외동포청장	「제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제외국민등록부 등본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장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자료
11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1호	1,800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1호	900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6,000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2호	1,800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6,000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3호	1,800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6,000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2024. 6. 27.] [고시 제2024-1호, 2024. 6. 27.,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02 - 2100 -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법령적용) ① 법 및 영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을 받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자회사등"이라 한다)에도 적용된다.

② 해외자회사등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8조의 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회사 등의 보고

제3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6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 - 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 ② 금융회사등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8조(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 ① 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2조(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련자료의 보존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제14조(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기간 기산방법) < 삭제 >

제16조(관련자료의 열람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및 관련자료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17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회사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③ 영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보고책임자는 환전영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된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등록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①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제22조(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등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제6장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 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및 검사

제25조 삭제

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 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0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⑨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06 - 1호, 2006. 1. 18.>

이 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 - 1호,2008. 1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고서식의 특례) 금융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 2009년 6월 21일까지는 개정전 서식에 의해서도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2010 - 2호,2010. 6. 21.>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20호,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 - 2호,2018. 7. 12.>

이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1호,2019. 6. 26.>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1호,2021. 3. 23.>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 - 1호,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같은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10조 관련)

1. 한국은행
2. 한국방송공사
3. 한국교육방송공사
4. 한국교직원공제회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 (재)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 강원정보문화진흥원
1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2.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13. 전국은행연합회
14. 한국증권업협회
15. 생명보험협회
16. 대한손해보험협회
17.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8. 자산운용협회
1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0. 한국항만연수원
2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2. 한국해운조합
2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4. 한국해양조사협회
25.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
26. 예술의전당

<별지 제1호 서식>

표제부

1) 문서번호 : -
3) 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2) 보고일자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하여 보고되는 사항으로 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2. 보고책임자명	
3. 보고담당자명 ^{주1)}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번제 거래^{주1)}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1. 공동사항

5. 거래자(사업자)명			
6. 거래자(사업자)실명 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 여권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 BIC코드(SWIFT) ⁹⁹ ☐ 기타(기재:_____)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 법인등록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³ ☐ 사업자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7. 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			
8. 거래자(사업자)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II-2. ^{주2)} 개인의 경우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 (거소)	¹⁾⁻¹ 자택 ¹⁾⁻² 직장	(-)			
10. 거래자 생년월일* ^{주3)}		11. 성별* ^{주3)}	¹ ☐ 남	² ☐ 여	
12.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13.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14. 실명조판번호* ^{주4)}					
15. 여권 번호* ^{주5)}					
16. 거래자 직업 /사업내용	¹⁶⁻¹ 직업구분	☐ 직장인	☐ 개인사업자	☐ 무직	☐ 파악할 수 없음
	¹⁶⁻² 직장(회사)명*		¹⁶⁻²⁻¹ 부서명*		¹⁶⁻²⁻² 직위*
	¹⁶⁻³ 대표자명*				
	¹⁶⁻⁴ 업종코드* ^{주6)}				
	¹⁶⁻⁵ 사업자등록번호* ^{주7)}				
17. 고액자산가 여부* ^{주8)}	¹ ☐ 여	² ☐ 부			

(II-3). ^{주9)} 법인 .단체의 경우

18. 대표자명*			
19. 대표자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 여권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 BIC코드(SWIFT) ⁹⁹ ☐ 기타(기재:_____)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 법인등록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³ ☐ 사업자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20. 대표자 실명번호*		21. 대표자 전화번호*	
22. 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23. 대표자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24. 사업제(단체) 설립일*		25. 업종코드* ^{주1)}	
26. 법인등록번호*			

27.사업제(단계)	²⁷⁻¹ 본점	(-)
우편번호/주소*	²⁷⁻² 사업장	(-)
28.사업제(단계)	²⁸⁻¹ 본점	
전화번호*	²⁸⁻² 사업장	
29.사업제(단계)홈페이지 주소*		
30.법인구분*	³⁰⁻¹ 기업규모 ^{주10)}	¹ □ 대기업 ² □ 중소기업
	³⁰⁻² 금융회사등 여부 ^{주11)}	¹ □ 예 ² □ 부
	³⁰⁻³ 비영리단체 여부 ^{주12)}	¹ □ 예 ² □ 부
	³⁰⁻⁴ 국가공공단체 여부 ^{주13)}	¹ □ 예 ² □ 부
	³⁰⁻⁵ 상장 여부 ^{주14)}	¹ □ 예 ² □ 부
31.상장정보*	³¹⁻¹ 거래소	국내 ¹ □ 유가증권시장 ² □ 코스닥시장
		국외 ³ □ 뉴욕증권거래소 ⁴ □ NASDAQ
		⁵ □ 런던증권거래소 ⁶ □ 홍콩증권거래소
⁷ □ 기타(기재_____)		

주1) 본 항목에 거래가 일어난 순서를 기재하되 거래내용이 2건 이상이어서 추가 기재할 경우에는 본 페이지를 복사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단, 이 경우 III ~ V에 관련되는 내용을 거래건별로 추가 기재하여 함

주2) II의 II-1.공동사항은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¹□주민등록번호(개인), ⁴□여권번호, ⁶□외국인등록번호, ⁷□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3) 10.생년월일, 11.성별 : II의 II-1.공동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항

주4) 14.실명조합번호는 II의 II-1.공동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방법에 의거 국내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번호임, 이 경우 여권번호는 필수 기재

주5) 15.여권번호는 II의 II-1.공동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II의 II-1.공동사항 중 6.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⁶□ 외국인등록번호, ⁷□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6) II의 II-2.개인의 경우, ¹⁶⁻⁴업종코드와 II의 II-3.법인단체의 경우, 25.업종코드는 통계청 (www.m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체계"를 따르며, 대/중/세/세세분류 모두 기재할 수 있다(예: 대분류 '01'농업일 경우, 뒷자리예 'Z'을 포함하여, '01ZZZ'로 보고).

주7) ¹⁰⁻⁵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재

주8) 17.고객자산가여부는 각 금융회사등의 자체기준에 의한 고객자산관리 고객임.

주9) II의 II-1.공동사항,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¹□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10) 대 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체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

주1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회사등

주12) 법리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

주13) 고객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주14)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II와 관련하여 고객신원확인 의무를 이행한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거래발생일시					
33.거래채널	¹ □ 창구	³ □ PB센터	² □ 자동화기기	⁴ □ 인터넷뱅킹	⁵ □ 전화/휴대전화
	⁶ □ 콜센터	⁷ □ 대출모집인	⁸ □ 보험설계사	⁹ □ 보험대리점	¹⁰ □ 보험중개사
	¹¹ □ 방카슈랑스	¹² □ 모바일 앱	¹³ □ 모바일 웹	¹⁴ □ 인터넷 웹	¹⁵ □ 온라인고객센터
¹⁶ □ 기타(기재_____)					
34.거래영입점 우편번호*			35.거래영입점명*		
36.거래수단	¹ □ 현금	² □ 수표	³ □ 주식	⁴ □ 채권	⁸ □ 기타 유가증권
	⁵ □ 외환	⁶ □ 대계	⁷ □ 전자화폐	⁹ □ 가상자산	¹⁰ □ 기타(기재_____)
37.거래종류	¹ □ 입금	² □ 출금	³ □ 환전	⁴ □ 영수	⁵ □ 송금
	⁷ □ 상환	⁸ □ 이계영수	⁹ □ 이계송금	¹⁰ □ 배수	¹¹ □ 배도
	¹³ □ 출고	¹⁴ □ 대계입고	¹⁵ □ 대계출고	¹⁶ □ 수표지급	¹⁷ □ 수표발행
	¹⁹ □ 해지	²⁰ □ 보험료납입	²¹ □ 보험금지급	²² □ 지급	²³ □ 발행
	²⁵ □ 가상자산	²⁶ □ 가상자산	²⁷ □ 가상자산	²⁸ □ 가상자산	²⁹ □ 기타(기재_____)

	매수	매도	입고	출고
38.거래상품-	¹ ☐ 수시입출금 예금 ¹² ☐ 투자신탁 ³⁰ ☐ 채권(무기명) ³⁵ ☐ 파생(옵션) ⁴⁴ ☐ 보험(보장) ⁶⁵ ☐ 보험(일반손해) ⁷⁵ ☐ 증권저축	² ☐ 적립식 예금 ²¹ ☐ 주식(장내) ⁴⁰ ☐ 대출(담보) ⁵⁰ ☐ 파생(스왑) ⁶² ☐ 보험(연금) ⁶⁶ ☐ 보험(계보험) ⁷⁶ ☐ 퇴직연금	³ ☐ 거치식 예금 ²² ☐ 주식(장외) ⁴² ☐ 대출(신용) ⁵⁵ ☐ 파생(기타(기계____)) ⁶³ ☐ 보험(저축) ⁷³ ☐ CMA ⁷⁹ ☐ 기타(기계____)	¹¹ ☐ 신탁 ³¹ ☐ 채권(기명) ³⁶ ☐ 파생(선물) ⁷⁷ ☐ 가상자산 ⁶⁴ ☐ 보험(투자) ⁷⁴ ☐ Wrap ⁹¹ ☐ 해당사항 없음 ^{주1)}
39.통화종류 ^{주2)}	¹ ☐ 원화(KRW) ² ☐ 외국환 (¹ ☐ 미국달러(USD) ² ☐ 일본엔(YEN) ³ ☐ 유로화(EUR) ⁴ ☐ 호주달러(AUD) ⁶ ☐ 중국위안(CNY) ⁵ ☐ 기타(기계____)) ³ ☐ 가상자산			
40.원화거래금액*				
41.외국환거래금액*				
42.달러화 환산금액*				
43.관련계좌 잔계 여부 ^{주3)}	¹ ☐ 예 (☐ 자행계좌 ¹ ☐ 타행계좌 ²) ² ☐ 부			
44.송금/수취계좌 잔계 여부 ^{주4)}	¹ ☐ 예 (☐ 자행계좌 ¹ ☐ 타행계좌 ²) ² ☐ 부			
45.거래대리인 잔계여부	¹ ☐ 잔계 ² ☐ 잔계안함 ³ ☐ 파악안됨			

주1) 해당사항없음은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주2) 39.통화종류가 ² ☐ 외국환인 경우에는 41.외국환거래금액에 해당통화 외국환 금액을 기재하고 45.달러화 환산금액에 해당 외국환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을 기재하며, 39.통화종류가 ³ ☐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40.원화거래금액에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3) 본 항목 중 ¹ ☐ 예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회성거래의 경우 ² ☐ 부를 기재
 주4) 본 항목 중 ¹ ☐ 예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5) 37.거래종류가 ²⁵ ☐ 가상자산 매수 또는 ²⁶ ☐ 가상자산 매도인 경우에는 43.관련계좌 잔계 여부에 ¹ ☐ 예(☐ 타행계좌³)를 표기하고,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6) 가상자산의 이전, 교환 등의 경우에는 37.거래종류 중 ²⁷ ☐ 가상자산 입고 또는 ²⁸ ☐ 가상자산 출고로 기재한다.

첨부(III-1) 유가증권 정보 ^{주1)}

	⁵ ☐ 자기앞수표	⁶ ☐ 당좌수표	⁷ ☐ 가계당좌수표	⁸ ☐ 국고수표
46.관련유가증권의 종류	¹ ☐ 환어음 ⁹ ☐ 양도성예금증서	² ☐ 약속어음 ⁹⁹ ☐ 기타(기계____)	³ ☐ 국채	⁴ ☐ 공채
47.관련유가증권번호	연번호() ~ (), 개별수표번호(), (), ()			
48.발행/지급은행명	49.발행/지급영입권명 ⁴			
50.발행일	51.발행인/괴종소지인 구분		¹ ☐ 발행인 ² ☐ 괴종소지인	
52.발행인/괴종소지인명				
53.발행인/괴종소지인 실명 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 여권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 BIC코드(SWIFT) ⁹⁹ ☐ 기타(기계____)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 법인등록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³ ☐ 사업자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54.발행인/괴종소지인 실명번호				
55.발행인/괴종소지인 전화번호* ^{주2)}				

주1)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² ☐ 수표, ⁴ ☐ 채권, ⁸ ☐ 기타 유가증권' 또는 ⁴ 거래종류 항목에 ¹⁶ ☐ 수표지급, ¹⁷ ☐ 수표발행, ²² ☐ 지급, ²³ ☐ 발행'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55.발행인/괴종소지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 48.발행/지급은행명 ~ 55.발행인/괴종소지인 전화번호는 자행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참부(III-2) 외환 정보 ^{주1)}

b6.외환거래목적	¹ □중어송금	² □여행정비	³ □유학정비	⁴ □해외계제비	⁵ □해외이주비
	⁶ □외화예금	⁷ □해외직접투자	⁸ □무역거래	⁹ □무역외거래	
	⁹¹ □알수없음	⁹⁹ □기타(기재_____)			

주1) III의 36.거래수단항목에 ⁴□외환 또는 ⁸거래종류항목에 ⁹□환권 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참부(III-3) 매수·매도 정보 ^{주1)}

b7.매매종목명		b8.매매수량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A0}□매수/^{A1}□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참부(III-4) 입고·출고 정보 ^{주1)}

b9.거래종목명		b10.거래수량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A2}□입고/^{A3}□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참부(III-5) 대체입고·대체출고 정보 ^{주1)}

b1.거래종목명		b2.거래수량	
b3.대상금융회사등명칭			
b4.금융회사등영업점명		b5.영업점우편번호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A4}□대체입고/^{A5}□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참부(III-6) 보험 정보 ^{주1)}

b6.보험가입금액		b7.고가의 자산여부*	¹ □여 ² □부 ³ □알수없음
b8.계약일		b9.만기일	
b10.보험료납입방법	¹ □일시납 ² □연납 ³ □선납/월납 ⁴ □환불/취소 ⁵ □월납 ⁹⁹ □기타(기재_____)		

구분	71.성명/별명	실명		74.계약자와의관계 ^{주3)}	75.국적
		72.실명번호구분 ^{주2)}	73.실명번호		
¹ 주피보험자					
² 종피보험자*					
³ 수익자*					
⁴ 모접인(중개인)*					

주1)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A6-A9}□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II의 II-1.공동사항의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제기에 따라 선택 기재

주3) 74.계약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기타(기재), 알수없음 중에서 선택기재

참부(III-7) 거래대리인 정보 ^{주1)}

b76.거래대리인명	
b77.거래자와의 관계	¹ □배우자 ² □부모 ³ □자녀 ⁴ □형제자매 ⁵ □친척 ⁶ □상사 ⁷ □동료(친구) ⁸ □기타(기재_____) ⁹ □알수없음
b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b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	
b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 ^{주2)}	
b81.거래대리인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주1)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참부(III-8) 거래목적 정보 ^{주1)}

82.거래 목적*	¹ □ 물품 등 사업상 대금결제	² □ 차입/부채상환
	³ □ 상속증여성 거래	⁹⁹ □ 기타(기재_____)

주1)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¹□'부'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¹□'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IV-1.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 정보

83.계좌번호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 금융회사등 명칭* 주1)	
86.계좌개설영업점 우편번호*	
87.계좌개설 영업점명*	
88.계좌 개설 목적*	¹ □ 급여 및 생활비 ² □ 저축 및 투자
	³ □ 결제 (□보통로 납부,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⁴ □ 사업상 거래 ⁵ □ 보장 ⁶ □ 상속 ⁹⁹ □ 기타(기재_____)
89.계좌개설 대리인 여부	¹ □존재 ² □존재안함 ³ □알수없음

IV-2. 주2)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

90.계좌주 성명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92.계좌주 실명번호			
93.계좌주 생년(월)일*		94.계좌주 국적*	
95.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96.계좌주 전화번호*		97.계좌주 휴대전화번호*	

주1) 85.계좌개설 금융회사등명칭은 타행계좌 예금을 대지급/위탁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주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IV-2)는 자행계좌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함

첨부(IV-1) 대표자 정보 주3)

98.대표자명*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00.대표자 실명번호*			
101.대표자전화번호* 주3)			
102.대표자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주1) IV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IV-2) 9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¹□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⁶□투자등록번호, ⁷□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2) 첨부(IV-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IV-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IV-2) 계좌개설대리인 정보 ^{주1)}

103.계좌개설대리인명			
104.계좌주와의 관계	¹ □배우자 ² □부모 ³ □자녀 ⁴ □형제자매 ⁵ □친척 ⁶ □상사 ⁷ □동료(친구) ⁸ □기타(기재:_____)		
10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0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08.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주1) IV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IV-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IV-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 송금인/수취인 정보

V-1. 자행 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1)}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10.계좌주명		
111.계좌주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12.계좌주 실명번호			
113.계좌개설점	114.계좌개설일자		
115.계좌주 우편번호및주소	(-)		
116.계좌주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117.계좌개설대리인여부	¹ □존재 ² □존재안함 ³ □알수없음		

주1)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첨부(V-1) 송금인/수취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주1)}

118.대표자명*			
119.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20.대표자 실명번호*			
121.대표자 전화번호* ^{주2)}			
122.대표자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 주1)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¹□주민등록번호(기타단계),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⁶□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V-2) 송금인/수취인의 계좌개설대리인에 관한 정보 ^{주1)}

123.계좌개설대리인명	
124.계좌주와의 관계	¹ □배우자 ² □부모 ³ □자녀 ⁴ □형제자매 ⁵ □친척 ⁶ □상사 ⁷ □동료(친구) ⁸ □기타(기재:_____)
12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계)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2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28.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주1) V-1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2. 타행(국외) 관련 양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30.계좌주구분	¹ □개인 ² □법인 ³ □알수없음
131.계좌주명	
132.상대국가명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_)
133.상대금융회사등명칭	134.상대영업점명*

주)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VI.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다음 중 본 보고서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복수선택 가능).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

※본 항목은 긴급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혐의거래보고(STR)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으로 본 항목 선택시 다른건에 우선하여 긴급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 ☐ 금융사고 등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 2) ☐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이 의심되는 거래
- 3) ☐ 거래의 외화도피로 추정되는 거래
- 4) ☐ 조직범죄 및 강 절도 등 강력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
- 5) ☐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 6) ☐ 기타 사회통념상 긴급조사(우선조사)가 요청되는 거래
- 7) ☐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

- 1) ☐ 설명내용 불명확 또는 거래에 대한 비필요구
- 2) ☐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불제공 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3) ☐ 업력이나 업종규모, 개인능력에 비해 과다한 거래실적
- 4) ☐ 은행, 행색과 거래금액간의 부조화
- 5) ☐ 중요인물 관련 거래
- 6) ☐ 어색하고 불안한 태도 및 언행
- 7) ☐ 사전거래가 없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 8) ☐ 의심스러운 동행자 참여거래
- 9) ☐ 불특정다수와의 거래
- 10) ☐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빈번하거나 갑작스런 변경

VI-3. 계좌(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계정, 가상자산주소 등을 포함)정보 관련*

- 11) ☐ 타인의 명의 또는 계좌의 이용 (다수계좌 여부(☐여¹, ☐부²))
- 12) ☐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계좌개설 (계좌주 동일 여부(☐여¹, ☐부²))
- 13) ☐ 의심스러운 계약/계좌 해지
- 14) ☐ 단발성 계좌의 이용

VI-4. 거래유형 관련*

- 15) ☐ 갑작스러운 거래체전의 변화
- 16) ☐ 원거리거래
- 17) ☐ 교환거래
- 18) ☐ 분할거래
- 19) ☐ 현금에 집착하는 거래
- 20) ☐ 거래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중 인출
- 21) ☐ 무기명증서(무기명채권, CD, CP 등) 관련거래
- 22) ☐ 계좌개설 없이 거래의 환전요구 또는 외국으로의 송금
- 23) ☐ 의심스러운 담보대출 또는 보험계약 즉시 약관대출
- 24) ☐ 주금 납입거래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요청)
- 25) ☐ 다중거래의 동시요청
- 26) ☐ 빈번한 입출금(입출고)
- 27) ☐ 의심스러운 대여금고 또는 보조예수 거래
- 28) ☐ 법인자산 또는 타인자산 담보 거래
- 29) ☐ 무관입종 또는 의심스런 계산에 대한 보험계약 거래
- 30) ☐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VI-5. 기타 특정 및 유형*

- 31) ☐ 거래의 내용이 VI-1~VI-5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특정 및 유형을 별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6하 원칙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특징을 기술하십시오. 또한, 거래내역의 경부문서 존재시 경부문서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할 것. ⁷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1)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2)거래 발생일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3)거래 발생 장소(영업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4)금융거래동 수단(상품)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5)금융거래동 방법(특이거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6)법 의거대로 판단한 사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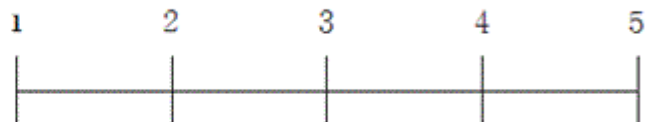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7)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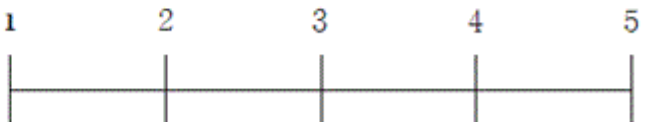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관련문서번호] () *

[저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십시오.



[본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십시오.



[첨부파일(Soft Copy)] *

첨부파일명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작성 방법]

1. 목 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각목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의 금융거래등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호의 “보고 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거래채널”이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행위를 행한 경로를 의미한다.

2.1.4 “거래수단”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치이전의 수단을 말한다.

2.1.5 “거래종류”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행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종류를 말한다.

2.1.6 “거래상품”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거래한 의심스러운 금융상품 등의 종류를 말한다.

2.1.7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프로그램”이라 함은 보고기관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2 기타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 및 거래자의 확정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당해 금융회사등과 그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인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자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한다.

3.4 보고의 시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이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보고의 방법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온라인 보고방식)에 의한 보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험기반 혐의거래보고(STR) 지침”에 따른다.

3.6 기타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에서 해설되지 않은 부분은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구성은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송금인/수취인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에는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2008-일련 번호).
-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 3) 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보고서가 종전 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종전 보고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1.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4)는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1. **보고기관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와 다른 법률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한다(예 : 기업은행의 경우 → ‘중소기업은행’으로 기재). 전산서식에는 보고기관의 기관고유 코드(Code)를 기재한다.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혐의거래보고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전화번호**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혐의거래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혐의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기재한다.

II-1은 공통사항을 기재한다

5. **거래자(사업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개인성명(사업자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각각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한글명칭을 기재한다.

6.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6-8. ⁸□투자등록번호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①외국단체등록증 ②당해 국가의 정부발행 단체설립/설정 증명서류 ③투자등록증 ④외국인투자 신고수리서(인가서)이며 이러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확인된 번호를 통칭하여 ⁸□투자등록증번호라 한다.

6-9. ⁹□기타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¹□주민등록번호(개인) ~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의료보험증 번호)를 말한다. 이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상 모든 실명번호 및 실명번호구분은 상기의 예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7.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사업자) 국적: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을 ‘¹□한국 ²□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II-2는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에 기재한다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거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또는 직장의 우편번호/주소

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 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10. 거래자 생년월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1. 성별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12.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3.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4. 실명조합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 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 방법에 의하여 국내금융회사등이 사용하는 실명 조합번호를 기재한다.
15. 여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Ⅱ-1.공통사항 6.거래자 (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16. 거래자 직업/사업내용 : ¹⁶⁾⁻²직장(회사)명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현재 직장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기재하고 직장인의 경우 ¹⁶⁾⁻²⁻¹부서명, ¹⁶⁾⁻²⁻²직위, ¹⁶⁾⁻³대표자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¹⁶⁾⁻⁴업종코드에는 직장 및 회사가 속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또한 ¹⁶⁾⁻¹ 직업구분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¹⁶⁾⁻⁵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17. **고액자산가 여부** :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한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II-3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 기재한다.

18. **대표자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20. **대표자 실명번호** : '1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택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22. **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법인·단체 대표자의 자택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

소를 주소로 본다.

23.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¹□한국 ²□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 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24. 사업체(단체) 설립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예 : 2008년 7월 10일 설립된 경우 ‘20080710’으로 기재).
25. 업종코드 :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26. 법인등록번호 : 법인·단체의 ‘20.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다.
27. 사업체(단체)우편번호/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8. 사업체(단체) 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대표전화번호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 내선전화번호를 부기하여 기재한다(예 : 전화번호가 서울 ‘503-6792’이

고 내선번호가 ‘123’인 경우 ‘02-503-6792-123’로 기재).

29. 사업체(단체) 홈페이지 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30. 법인구분 : 법인·단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해당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³⁰⁾-1기업규모’는 대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채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한다.

‘³⁰⁾-2금융회사등 여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여’로 기재한다.

‘³⁰⁾-3비영리단체 여부’는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³⁰⁾-4국가공공단체 여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³⁰⁾-5상장여부’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의 공개기업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31. 상장정보 : ³⁰⁾-5상장여부항목에 “여”라고 표시된 경우 상장되어있는 거래소를 기재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 거래발생일시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 분까지 기재한다.

(예 : 2008년 9월 4일 11시 50분이 경우 ‘200809041150’로 기재)

33. 거래채널 : 의심스러운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34. 거래영업점 우편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35. 거래영업점명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 명동지점)
36. 거래수단 : 의심스러운거래가 발생한 거래수단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 현금 : 정부지폐(원화), 주화(원화)를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²□ 수표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고수표 등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³□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⁴□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⁵□ 외환 : 외국환 또는 외국통화를 말하며 원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통화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⁶□ 대체 :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 없이 장부상으로 한 계정의 자금을 다른 계정의 자금으로 옮겨 적는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수단을 말한다.
- ⁷□ 전자화폐 :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 ⁸□ 기타 유가증권 :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⁹□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⁹⁹□ 기타 : 상기에 표기된 거래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37. 거래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 입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²□ 출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³□ 환전 : 서로 다른 화폐와 화폐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종통화간의 교환거래를 말한다.
- ⁴□ 영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 ⁵□ 송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⁶□ 융자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모든 거래(예 : 대출)를 통칭한다.
- ⁷□ 상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융통하였던 자금을 갚는 거래를 말한다.
- ⁸□ 이체영수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타인의 계좌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 ⁹□ 이체송금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¹⁰□ 매수 :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¹□ 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²□ 입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에 예탁 또는 판매하여 금융회사등에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³□ 출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예탁 철회 또는 구매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⁴□ 대체입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⁵□ 대체출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¹⁶□ 수표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를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¹⁷□ 수표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로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¹⁸□ 계약 : 사법상(私法上)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를 포함한다.

¹⁹□ 해지 :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²⁰□ 보험료 납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를 말한다.

²¹□ 보험료 지급 : 금융회사등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앞 보험금을 지급한 행위를 말한다.

²²□ 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²³□ 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⁹⁹□ 기타 : 상기의 거래방식 이외의 거래방식일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내역을 기재한다.

38. 거래상품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상품을 제시된 항목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 중 ^{61~66}□보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6)’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⁹¹□ 해당사항 없음’은 금융거래등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

39. 통화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거래한 통화의 종류를 ¹□원화, ²□외국환 또는 ³□가상자산으로 나누어서 선택하고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외국통화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재하도록 한다.
40. 원화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의 최소단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41. 외국환 거래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 해당되는 외국통화 금액을 기재한다(소수점 미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42. 달러화 환산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 중 □미국달러(USD)¹ 이외의 외국통화를 선택한 경우 해당 외국통화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US Con. Rate)을 기재한다.
43. 관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¹□여’를 선택하고,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²□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¹□여’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고 ‘²□부’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8)’을 추가로 기재한다.
- 관련 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할 경우, ¹□자행계좌 ²□타행계좌를 선택해야한다. ¹□자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의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다. ²□타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 중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금융회사등명칭, 86.계좌개설영업점우편번호, 87.계좌개설영업점명, 88.계좌개설목적, 89.계좌개설대리인여부’ 등이 선택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기재한다.
44. 송금/수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¹□여를 선택하고,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²□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당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45.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¹□존재, ²□존재안함, ³□파악안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¹□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7)’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 ~ III-7)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첨부(III-1) :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²□수표, ⁴□채권, ⁸□기타 유가증권’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⁶□수표지급, ¹⁷□수표발행, ²²□지급, ²³□발행’이 표기 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46. 관련 유가증권의 종류 :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류를 선택한다.

47. 관련 유가증권번호 : 관련된 유가증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유가 증권이 1매일 경우 또는 관련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유가증권별로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 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유가증권 번호와 마지막 유가증권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48. 발행/지급은행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은행을 기재한다.

49. 발행/지급영업점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50. 발행일 : 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일을 기재한다.

51.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 교환제시 및 청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제시인이 발행인인지 최종소지인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2. 발행인/최종소지인명 : 교환제시 및 청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최종소지인인 개인 및 법인명을 기재한다.
53.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 : 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유가증권의 ‘54.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에 기재될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4.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 ‘53.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된 실명확인증표상 실명확인번호를 기재한다.
55.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첨부(Ⅲ-2) : Ⅲ의 36.거래수단 항목에 ‘⁶□외환’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³□환전’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6. 거래목적 : 당해 외국환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첨부(Ⅲ-3) : Ⅲ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⁰□매수/¹¹□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7. 매매종목명 :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 경우 해당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종목명을 기재한다.

58. 매매수량 :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4)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²□입고/¹³□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9. 거래종목명 : 입고 또는 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0. 거래수량 : 입고 또는 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5)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⁴□대체입고/¹⁵□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1. 거래종목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2. 거래수량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3. 대상금융회사등명칭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 할 상대방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64. 금융회사등영업점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할 상대방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65. 영업점 우편번호 : ‘64.금융회사등영업점명’에 기재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II-6) :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61~66}□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6.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금액을 말하며, 청약서 및 보험증권 상 기재되는 주 계약금액과 동일한 의미이다.

67. 고가의 자산여부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담보 또는 보험목적물 등으로 제공되는 대상목적물이 거래자의 재산 보유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¹□여) 그렇지 않다

(²□부) 라고 판단하여 그 해당여부를 선택한다.

68. 계약일 : 보험의 계약일자를 기재한다.
69. 만기일 : 마감일자를 의미하며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나는 일자를 기재한다. 종신 보험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99991231'로 기재한다.
70.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보험에 대한 계약내용을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으로 나누고 각 이해 관계별로 다음의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71. 성명/법인명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2. 실명번호 구분 : '73.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3. 실명번호 : '72.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74. 계약자와의 관계 : 계약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 란에 기재한다.
75. 국적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투자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II-7) :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76. 거래대리인명 : 거래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7.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거래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란에 기재한다.

78.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9.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 ‘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80. 거래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81. 거래대리인 국적 : 거래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II-8) :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²□부’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82. 거래 목적 : 일회성 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Ⅳ.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

‘Ⅲ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¹□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Ⅳ-1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기재한다.

83. 계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84. 계좌개설일자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할 수 있다.

85. 계좌개설 금융회사등명칭 : 타행계좌 예금을 대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83.계좌 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86. 계좌개설 영업점 우편번호 : ‘87.계좌개설 영업점명’에 기재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87. 계좌개설 영업점명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88. 계좌 개설 목적 : 계좌 개설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89.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 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를 기재한다.

90. 계좌주 성명 : 관련 계좌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9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9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92. 계좌주 실명번호 :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93. 계좌주 생년(설립)월일 : 계좌주가 개인일 경우 계좌주의 생년월일을 기재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설립 년월일을 기재한다.

94.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9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96. 계좌주 전화번호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97. 계좌주 휴대전화 번호 : 계좌주가 개인인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V-1) :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중 ‘91.계좌주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98. 대표자명 : 관련계좌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9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0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0. 대표자 실명번호 :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V-2) : ‘IV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03.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0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란에 기재한다.
10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0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0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 V-1. 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0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당행(자행) 타 영업점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당행(자행)내 타 영업점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10. **계좌주명**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11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12. **계좌주 실명번호** : ‘11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13. **계좌개설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 (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114. **계좌개설일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 (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한다.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한다.
11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자택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116.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117.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첨부(V-1) :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 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118. 대표자명 :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0. 대표자 실명번호 : ‘119.대표자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 번호를 기재한다.

1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 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V-2) :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⁴□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23.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2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개설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 □기타’란에 기재한다.
12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2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2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2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 V-2. 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상대 송금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30. 계좌주 구분 :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를 개인과 법인 중 하나를 선택한다.
131. 계좌주명 :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32. 상대국가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국가,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국가를 ¹□한국 또는 ²□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133. 상대금융회사등명칭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134. 상대영업점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VI.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본 항목은 등록된 혐의거래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기타 특징 및 유형(VI-6)에 이르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본 항목은 의심의 정도가 크고 전제범죄로 의심되어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자가 판단하는 사건인 경우에 기재하며, 다른 보고건에 우선하여 긴급조사 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VI-2) : 혐의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과 관련하여 ¹⁾□~¹⁰⁾□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3. 계좌정보 관련(VI-3) : 혐의거래자의 계좌정보와 관련하여 ¹¹⁾□~¹⁴⁾□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4. 거래유형관련(VI-4) : 혐의거래자의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¹⁵⁾□~²⁹⁾□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5. 기타 특징 및 유형(VI-5) : 혐의거래의 내용이 VI-1~VI-4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특징 및 유형을 별도로 기재한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1. 해당 혐의거래의 혐의근거(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다. 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며, 아래 목차별로 구분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예시)>

1. 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ABC상사는 2003년 1월 24일 설립된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년 말부터 당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임

2. 거래 발생일자 관련	지난 2005년 2월 10일부터 동년 3월 13일까지 거래가 발생하였다
3. 거래 발생 장소 (영업점) 관련	미국 LA소재 000은행 및 NY소재 000은행의 거래지라고 말하는 미상의 회사로부터 거래하였다
4. 금융거래등 수단 (상품) 관련	총4회에 걸쳐 미화 59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ABC상사 명의의 당행 000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원화 입금처리 하였음
5. 금융거래등 방법 (특이거래) 관련	이후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XX(현재 신용불량거래자임)가 당행 000지점에입금일 익일 내걸하이 입금액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점내 현금화보 문제로 일단 거절하였음.
6. 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거래의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묻자, 회사가 수출하는 0000 장치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자금이라고 하면서 최근 환율폭등으로 인한 손실을 현금환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함
7. 종합의견	1. 제목 : 추정되는 전제범죄 또는 의심유형 2. 거래자 정보 관련 종합의견 3. 거래내역 정보 관련 종합의견 4. 의심되는 사유 관련 종합의견

2. 작성자의 입장에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를 선택한다. 혐의도는 1~5점으로 구성되며 지점용과 본점용으로 나누어진다.

○ 지점용 : 지점에서 작성한 경우, 지점담당자가 지점 혐의도를 선택한다.

○ 본점용 : 본점에서 작성한 경우, 본점담당자가 본점 협의도를 입력한다.

협의도 1 :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협의도 2 : 조금 의심스러움

협의도 3 : 의심스러움

협의도 4 : 보통이상 의심스러움

협의도 5 : 매우의심스러움

3. 첨부파일(Soft Copy) : 협의거래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좌측에 표기된 파일명을 참조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별도로 파일명을 추가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4. 별도 송부하는 문서(FAX 포함) : 협의거래보고 이후에 별도로 FAX로 전송할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본점에서만 사용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표제부

1. 문서번호 :
2. 보고일자 :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카지노사업자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2008.12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
률 제4조(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에 의하여 보고
되는 사항으로 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이 사
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2. 보고기관 유형	1 ☐ 외국인권용 2 ☐ 내국인출입
3. 보고책임자명		4. 보고담당자명 ^{주)}	
5.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파악안됨 ^{주1)} ☐ / () 번째 거래 ^{주2)}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6.거래자명				
7.거래자 실명번호구분		1□주민등록번호 2□여권번호 3□외국인등록번호 4□국내거소신고번호 5□기타(기재_____)		
8.거래자 실명번호				
9.거래자 국적 주3)		1□한국 2□외국(국명:_____) 3-1생년월일(YYYYMMDD) 3-2성별(□남 □여)		
10.거래자 우편번호/주소	10-1자택* 10-2직장*	(-) (-)		
11.거래자 자택전화번호*		12.거래자 휴대전화번호*		
13.거래자직업/ 사업내용	13-1직장명*			
	13-2직업	1□건설업 2□공무원 3□군인 4□금융업 5□농/축/임/수산업 6□무역업 7□문화 8□언론단체 9□자영업 10□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11□제조업 12□종교단체 13□주부 14□학생 15□무직 16□기타(기재_____) 17□파악할 수 없음		

주1) 거래자 정보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본 항목에 체크하여 거래자 정보가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님을 표시함

주2) 본 항목에 거래가 일어난 순서를 기재하되 거래내용이 2건 이상이어서 추가 기재할 경우에는 본 페이지를 복사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단, 이 경우 III ~ V에 관련되는 내용을 거래건별로 추가 기재하여 함

주3) 9-2-1.생년월일, 9-2-2.성별은 9.거래자 국적이 외국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필수사항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14.거래발생일시					
15.거래채널	1□출납창구 2□게임테이블 3□기타(기재_____)				
16.거래수단	1□현금 2□수표 3□기타(기재_____)				
17.거래종류	1□웹스구매 2□웹스물권				
18.반복거래 여부	1□예 2□부				
19.게임종류	1□블랙잭 2□룰렛 3□바카라 4□다이사이 5□슬롯머신				
	6□비디오포커 7□캐리비언포커 8□파이고우포커 9□렛잇라이드포커 10□키노				
	11□빅휠 12□배이카우 13□판타 14□조커세븐 15□라운드크랩스				
	16□마작 17□프렌치볼 18□차카락 19□트란타국판타				
	20□해당사항 없음 21□기타(기재_____)				
20.통화종류	1□원화(KRW) 2□기타				
21.원화거래금액					
22.거래대리인 존재 여부	1□존재 2□존재안함 3□파악안됨				

첨부(III-1). 수표 정보^{주1)}

23. 수표 종류	¹ □자기앞수표 ² □기타(기재_____)		
24. 수표번호	연번호() ~ (), 개별수표번호(), (), ()		
25. 발행은행명		26. 발행영업점명 [*]	
27. 발행일		28. 발행인/피종소지인 구분	¹ □발행인 ² □피종소지인
29. 발행인/피종소지인명			
30. 발행인/피종소지인 실명 번호 구분	¹ □주민등록번호(개인) ²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사업자등록번호 ⁴ □여권번호 ⁵ □법인등록번호 ⁶ □외국인등록번호 ⁷ □국내거소신고번호 ⁹⁹ □기타(기재_____) 		
31. 발행인/피종소지인 실명번호			
32. 발행인/피종소지인 전화번호 ^{주2)}			

주1) '16.거래수단' 항목 중 ²□수표'에 표기를 한 경우

주2) '32.발행인/피종소지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

첨부(III-2). 거래대리인 정보^{주1)}

33. 거래대리인명				
34. 거래자와의 관계	¹ □카지노관광 알선업자 ² □여행가이드 ³ □직원 ⁴ □동료(친구) ⁵ □기타(기재____) ⁹ □알수없음			
35. 대리인 실명번호구분	¹ □주민등록번호 ² □여권번호 ³ □외국인등록번호 ⁴ □국내거소신고번호 ⁵ □기타(기재____)			
36.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37. 거래대리인 전화번호 ^{주2)}				
38. 거래대리인 국적 ^{주3)}	¹ □한국 ² □외국(국명:____)			

주1) '22.거래대리인 존재여부'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략

주2) '37.거래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주3) '38.거래대리인 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한다.

IV.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다음 중 본 보고서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복수선택 가능)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

※본 항목은 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전제범죄로 의심되어 사급히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으로 본 항목 선택시에는 다른권에 우선하여 긴급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¹⁾ ☐ 금융사고 등 거래행령이 의심되는 거래
- ²⁾ ☐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이 의심되는 거래
- ³⁾ ☐ 거래의 외화도피로 추정되는 거래
- ⁴⁾ ☐ 조직범죄 및 강절도 등 강력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
- ⁵⁾ ☐ 서명위조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 제시
- ⁶⁾ ☐ 위조된 지불수단 사용
- ⁷⁾ ☐ 기타 사적통념상 긴급조사(우선조사)가 요청되는 거래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

- ¹⁾ ☐ 실명노출 기피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요구
- ²⁾ ☐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불제공 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³⁾ ☐ 의심스러운 동행자 참여거래
- ⁴⁾ ☐ 직원에게 뇌물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 ⁵⁾ ☐ 비정상적인 태도
- ⁶⁾ ☐ 게임 미참여 또는 최소한의 게임참여
- ⁷⁾ ☐ 여러 금융기관 발행 지불수단 사용
- ⁸⁾ ☐ 다양한 종류의 지불수단 교환 요청
- ⁹⁾ ☐ 거래의 소액권을 고액권으로 교환 요청
- ¹⁰⁾ ☐ 다양한 권종의 수표발행 요청

VI-3. 거래유형 관련

- ¹¹⁾ ☐ 분할거래
- ¹²⁾ ☐ Cut-off 시간 전후의 분할거래
- ¹³⁾ ☐ 타인명의 거래
- ¹⁴⁾ ☐ 거래의 쉼스 미교환 반출
- ¹⁵⁾ ☐ 쉼스 교환금액이 쉼스 구매금액과 게임수익금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
- ¹⁶⁾ ☐ 기타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V.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6하 원칙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특경을 기술하십시오. 또한, 거래내역의 첨부문서 존재시 첨부문서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할 것. 단, 거래의 내용이 단순하고 6하 원칙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의심스러운 근거에 기초하여 ^{4)~6)}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하거나 ⁷⁾종합 의견만 기재하여도 됨)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¹⁾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²⁾거래 발생일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³⁾거래 발생 장소(영업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⁴⁾금융거래 수단(상품)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⁵⁾금융거래 방법(특이거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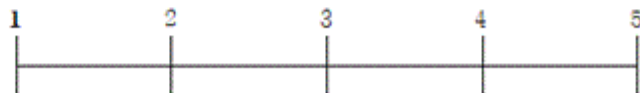
⁶⁾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⁷⁾종합의견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운을 의미함)를 체크하십시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작성방법】

1. 목 적

2007년 12월 2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하여 카지노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등을 대신하여 쓰이는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와 교환하는 것을 금융거래로 간주함으로써 카지노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작성 안내는 카지노 사업자의 혐의 거래보고서의 작성시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혐의거래보고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 거래 보고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출납창구"라 함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창구를 말한다.

2.1.4 "게임테이블"이라 함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

2.1.5 "칩스환전"이라 함은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1.6 "칩스구매"라 함은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 및 거래자의 확정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당해 카지노사업자와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자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칩스를 교환함에 있어 거래건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한다.

3.3 보고의 시기

협의를거래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 제2장 제3조에 의거 보고기관인 카지노사업자가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4 보고의 방법

보고를 하는 카지노사업자는 협의거래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예:플로피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카지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카지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4.1 표제부 작성

1~3은 보고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 : 2005-일련번호)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 분석

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이미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 보고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4.2 혐의거래보고 내용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와 다른 법률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한다. 전산서식에는 보고기관의 기관고유 코드(Code) 기재한다.
2. 보고기관유형 : 보고기관이 외국인전용인지 내국인 허용인지의 여부를 표시한다.
3.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명 : 보고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5.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만일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신원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상단의 파악안됨에 표시를 하여 고객 신원정보가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님을 표시한다.

6. 거래자 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7. 거래자 실명번호 구분 : ‘8.거래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5. ⁵□기타의 의미: 거래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⁴□주민등록번호 ~ ⁴□국내거소신고번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거래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9. 거래자 국적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을 ¹□한국 ²□외국 중 선택하여 기재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국명:____)에 해당국 코드를 부기하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별도로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⁹⁻²⁻¹) 생년월일, ⁹⁻²⁻²) 성별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을 기재한다.

10. 거래자 우편번호/주소 : 거래자의 자택 우편번호((-)에 기재) 또는 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연락가능한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11.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 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로 기재).

12.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 거래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10-XXXX-XXXX).

13. 거래자직업/사업내용

13-1) 직장명: 거래자가 근무하는 직장명을 기재한다.

13-2) 직업: 거래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직종을 선택하고, 파악되지 않은 경우 '□파악할 수 없음'을 선택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14)~22)은 보고대상 거래인 칩스구매, 칩스환전 거래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14. 거래발생일시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분을 기재한다.

(예: 2008년12월31일 경우, '0812311230'로 기재한다).

15. 거래채널 : 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1□출납창구, 2□게임테이블, 3□기타'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16. 거래수단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수단을 제시된 항목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17. 거래종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제시된 항목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칩스구매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 ²□칩스환전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8. 반복거래 여부 : 해당 의심스러운 보고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19. 게임종류 : 거래자가 카지노 내에서 참여한 게임의 종류를 기재한다.
20. 통화종류 : 거래자가 카지노 내에서 칩스를 교환한 통화의 종류를 기재한다.
21. 원화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을 최소단위(원단위)까지 기재한다.
22.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¹□존재 ²□존재안함 ³□'파악안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⁴□존재'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는 16.거래수단 항목 중 수표에 표기한 경우 정보를 기재한다.

23. 수표 종류 : 관련된 수표의 종류를 선택한다.
24. 수표 번호 : 관련된 수표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수표가 1매일 경우 또는 관련 수표가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수표별로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수표가 2매 이상 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수표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수표번호와 마지막 수표번호를 각각 기재 한다.

25. 발행은행명 : 지급 제시된 자기앞 수표의 발행 은행을 기재한다.
26. 발행영업점명 : 지급 제시된 자기앞 수표의 발행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27. 발행일 : 관련된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한다.
28.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 해당 수표의 최종 배서인이 발행인지, 최종소지인인지의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29. 발행인/최종소지인 명 : 해당 수표의 발행인/최종 배서인의 성명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30.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 : '31.발행인/최종 배서인 실명 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31.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 배서된 내용의 실명확인증표를 통하여 확인된 발행인/최종 배서인 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2.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첨부(III-2)는 '22.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33. 거래 대리인 명 : 거래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을 기재한다.
34.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자와 거래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한다.
35. 거래 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36.거래대리인 실명 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36. 거래 대리인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 대리인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7. 거래 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8. 거래 대리인 국적: 거래 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가 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IV.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IV-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해당 항목의 1) ~ 7)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긴급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분류한다.

IV-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 ~ 16)중 해당 사항을 표시한다.

V.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 부분

육하원칙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거래내역 외 첨부문서 존재 시 첨부문서의 종류를 기재한다.

또한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거래자의 의심스러운 정도를 1~5의 등급 중 (1 - 의심 스러우나 불확실함, 5-매우 의심스러움) 선택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표제부

1. 문서번호 :	2. 보고일자 :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4. 거래순번 : (거래순번/총거래건수)

금융기관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Currency Transaction Report)

2008.12

본 보고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2. 보고책임자명	
3. 보고담당자명 ^{주1)}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II. 고액현금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1. 공동사항

5. 거래자(사업자)명	
6. 거래자(사업자) 설명번호구분	¹ □주민등록번호(개인) ²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사업자등록번호 ⁴ □여권번호 ⁵ □법인등록번호 ⁶ □외국인등록번호 ⁷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투자등록번호 ⁹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기타
7. 거래자(사업자) 설명번호	
8. 거래자 국적 ^{주1)}	¹ □한국 ² □외국(국명: _____)

II-2. 개인의 경우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	(-)
10. 거래자 생년월일* ^{주2)}	11. 성별* ^{주2)} ¹ □ 남 ² □ 여
12. 거래자 전화번호*	
13. 실명조합번호* ^{주3)}	
14. 여권번호* ^{주4)}	
15. 거래자 직업/ 사업내용	¹⁵⁻¹ 직업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무직 □파악할 수 없음
	¹⁵⁻² 직장(회사)명*
	¹⁵⁻³ 업종코드* ^{주5)}
	¹⁵⁻⁴ 사업자등록번호*

II-3. 법인·단체의 경우

16. 대표자명*	
17. 대표자 설명번호 구분*	¹ □주민등록번호(개인) ² □여권번호 ³ □외국인등록번호 ⁴ □국내거소신고번호 ⁵ □기타
18. 대표자 설명번호*	
19. 대표자 국적 ^{주6)}	¹ □한국 ² □외국(국명: _____)

20.사업체(단체) 설립일*		21.업종코드* 주7)	
22.법인등록번호 주7)			
23.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23)-1 본점*	(-)	
	23)-2 사업장*	(-)	
24.사업체(단체) 전화번호	24)-1 본점*		
	24)-2 사업장*		

주1) II.의 '6.거래자 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 한다.

주2) '10.거래자생년월일', '11.성별'은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는 필수사항

주3) '13.실명조항번호'는 II.의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거 국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번호임

주4) '14.여권번호'는 II.의 개인의 경우(II-2), '8.거래자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로 II.의 공통사항(II-1) '6.거래자 실명 번호구분' 항목에 ☐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5) II.의 11-2.개인의 경우 ¹⁾³⁾업종코드와 II-3.법인단체의 경우, 21.업종코드는 통계청 (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체계"를 따르며, 대/중/세/세세분류 모두 기재할 수 있다(예: 대분류 '01'농업일 경우, 뒷자리에 '2'를 포함하여, '012ZZ'로 보고).

주6) II-3.법인·단체의 경우, '19.대표자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 한다.

주7) '18.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III. 현금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III-1. 공통 사항

25.거래발생일시			
26.거래영입점명			
27.거래채널	☐ 창구거래 ☐ 자동화기기거래 ☐ 기타		
28.거래수단	☐ 현금	29.거래금액	(원화)\
30.거래종류	☐ 계좌 ☐ 비계좌 ☐ 송금 ☐ 외환 ☐ 유가증권 ☐ 기타		
	☐ 저금 ☐ 영수		
31.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존재 ☐ 존재안함 ☐ 파악안됨		

첨부(III-1).거래대리인 정보 주1)

32.대리인명			
33.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주민등록번호(개인)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 사업자등록번호		
	☐ 여권번호 ☐ 법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 투자등록번호 ☐ 고유번호/납세번호		
	☐ BIC코드(SWIFT) ☐ 해당국가법인번호		
☐ 기 타			
34.대리인 실명번호*			
35.대리인 전화번호*			
36.대리인 국적 주2)	☐ 한국		
	☐ 외국(국명:_____)		
37.거래자와의 관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친척 ☐ 상사 ☐ 동료(친구)		

⁸ ☐ 기타(기재: _____) ⁹ ☐ 알수없음

주1) '31.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성

주2) '36.대리인 국적'은 한국 또는 외국 중 선택해야 하고, 외국인일 경우 '국명'을 기재해야 한다.

III-2. 계좌거래의 경우^{주1)}

38.관련 계좌번호	
39.계좌개설 영업점명	
40.계좌개설 일자	
41.계좌개설 대리인 존재여부	¹ ☐ 존재 ² ☐ 존재안함 ³ ☐ 파악안됨

주1) (III-2) 항목은 '30.거래종류'가 ⁴☐계좌'인 경우에 작성함

첨부(III-2).계좌개설 대리인 정보^{주1)}

42.계좌개설 대리인명	
43.계좌개설 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외국인등록번호 ⁶ ☐ 국대거소신고번호 ⁷ ☐ 고유번호/납세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¹⁰ ☐ 기타
44.계좌개설 대리인 실명번호	
45.계좌개설 대리인* 전화번호	
46.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47.계좌주와의 관계	¹ ☐ 배우자 ² ☐ 부모 ³ ☐ 자녀 ⁴ ☐ 형제자매 ⁵ ☐ 친척 ⁶ ☐ 상사 ⁷ ☐ 동료(친구) ⁸ ☐ 기타(기재: _____) ⁹ ☐ 알수없음

주1). '41.계좌개설 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성

III-3. 유가증권거래의 경우^{주1)}

48.관련 유가증권의 종류	¹ ☐ 표어음 ² ☐ 약속어음 ³ ☐ 국채 ⁴ ☐ 공채 ⁵ ☐ 자기앞수표 ⁶ ☐ 당좌수표 ⁷ ☐ 가계당좌수표 ⁸ ☐ 보통가계수표 ⁹ ☐ 국고수표 ¹⁰ ☐ 양도성예금증서 ¹¹ ☐ 선불카드 ¹² ☐ 기타
49.관련 유가증권번호	() ~ ()

주1) '30.거래종류'가 ¹☐비계좌 (¹☐유가증권)인 경우에 작성함

III-4. 자기앞수표거래의 경우^{주1)}

50.현금 지급은행		51.현금지급 영업점명	

주1) '48.관련유가증권의 종류'가 ⁵☐자기앞수표인 경우'로서, 자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타행발행 정액 자기앞수표를 '자기앞수표실시간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급한 권에 한하여 작성함

IV.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주1)}

52.수취인계좌번호			
53.수취금융기관명		54.수취인(수취계좌주) 성명	

주1) 상기 항목은 현금거래정보가 '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재한다.

Ⅷ. 취소 또는 정정보고에 관한 사항^{주1)}

취소 또는 정정사유	

주1) 상기 항목은 본 보고서가 이미 보고된 것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보고인 경우에 해당하며, 500자 이내로 기입함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고액현금거래 보고서 작성방법]

1. 목 적

이 작성방법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작성하여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서에 대해 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 금융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지급"이라 함은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보고기관으로부터 거래자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1.4 "영수"라 함은 입금, 수납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거래자로부터 보고기관에게로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2.1.5 "분할거래"라 함은 하나의 보고기관에서 동일인 명의의 현금거래가 1거래일 이내에 1회 이상 이루어졌으며, 그 건별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1.6 "고액현금거래 전산보고 지침"이라 함은 보고기관이 전자보고방식에 의한 고액현금거래보고서 작성시 준수하여야 할 표준으로서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2 기타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의 확정

현금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 등이 보고기관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보고 금융기관 등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별도로 합산하여 보고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보고기준 금액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2008년 3천만원에서 2010년부터는 2천만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3.3 보고면제 대상거래

거래자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 2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금융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3.4 보고의 시기

고액현금거래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분석과 고액현금거래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거래발생일 익영업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3.5 보고의 방법

금융기관 등은 온라인 보고를 우선으로 하나, 온라인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금융기관은 문서 또는 전자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등)로 봉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방식에 의한 보고 방법은 '고액현금거래(CTR) 전산보고 지침'에 따른다.

3.6 기타

동 작성 안내에서 해설되지 않은 부분은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4. 고액현금거래 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4.1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 현금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취소 또는 정정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4.2 표제부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 2008-일련번호)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 종전에 보고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4. 거래순번(거래순번/총거래수) : 분할거래의 동일자 거래건별 합계액이 보고기준금액 이상이 됨에 따라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경우, 전체 분할거래 가운데 당해 거래가 일어난 시간별 순서 및 전체 분할거래 건수를 기재한다.

4.3 고액현금거래 보고 내용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 사업자명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등록된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를 기재한다(예: 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예: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본점 보고담당자(예: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고액현금거래보고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 본점 보고담당자(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고액현금거래 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현금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II-1은 고액현금거래자에 대한 공통정보를 기재한다.

5. **거래자(사업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개인성명(사업자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각각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한글명칭을 기재한다.
6.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① ^B□투자등록번호 등의 의미

거래자(사업자)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① 외국단체등록증 ②당해 국가의정부발행 단체설립/설정 증명서류 ③투자등록증 ④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인가서)이며 이러한 실명확인 증표에 의해 확인된 번호를통칭하여^B□투자등록증번호 등 이라 한다.

② ⁹□기타의 의미

거래자(사업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¹□주민등록번호(개인) ~ ⁸□투자등록번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③ 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에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하여 국내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실명조합번호는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란이 아닌 'II-2 개인의 경우의, 13.실명조합번호'에 기재한다.

7.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 국적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의미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II-2는 고액현금거래자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에 기재한다

9. 거래자우편번호/주소 : 고액현금거래자의 자택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이 경우,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예: 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고액현금거래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를 기재한다.
10. 거래자 생년월일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1. 성별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12. 거래자 전화번호 : 고액현금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3. 실명조합번호 : 고액현금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방법에 의해 국내 금융기관이 사

용하는 실명조합번호를 기재한다.

14. **여권번호** : 고액현금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 거래자의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15. **거래자 직업/사업내용** : ¹⁵⁾⁻²직장(회사)명에는 고액현금거래자의 현재 직장명(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기재한다. ¹⁵⁾⁻³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재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¹⁵⁾⁻⁴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5단위)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II-3은 고액현금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 기재한다.

16. **대표자명** :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17. **대표자실명번호 구분** : '18.대표자 실명번호'를 확인한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8. **대표자실명번호** : '17.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9. **대표자 국적**: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20. **사업체(단체)설립일**: 고액현금거래자(법인, 단체)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예, 2008년 7월 10일 설립되었을 경우, 20080710으로 기재)

21. **업종코드**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5단위)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22. **법인등록번호**: 법인·단체의 '18.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다.
23. **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거래자(법인,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4. **사업체(단체) 전화번호**: 거래자(법인,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대표전화번호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 내선전화번호를 부기하여 기재한다. (예: 전화번호가 서울 503-6792이고 내선번호가 123인 경우, '02-503-6792-123'로 기재)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III-1은 현금거래 내역에 대한공통정보를 기재한다.

25. **거래발생일시**: 현금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분초를 기재한다(예: 2007년 9월 4일 11시 50분인 경우, "0709041150"로 기재)
26. **거래영업점명**: 현금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명동지점).
27. **거래채널**: 현금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¹☐창구거래 ²☐자동화기기거래 ³☐기타'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28. **거래수단**: 거래수단은 ¹☐현금으로 한정하여 보고한다.
29. **거래금액**: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을 최소단위(원단위)까지 기재한다.
30. **거래종류**: 현금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¹☐계좌 ²☐비계좌'로 나누고, ²☐비계좌' 거래의 경우 ⁴☐송금, ²☐외환, ³☐유가증권, ⁴☐기타' 거래 중에 한가지 거래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또한, 현금의물리적 이동 방향에 따라 ⁴☐지급 ²☐영수'로 나누어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기재한다.

31.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I(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존재' ²□존재안함'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경우, 본 항목에 '□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

32. 대리인명 : 거래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33. 대리인실명번호 구분 : '34.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34. 대리인 실명번호 : '33.대리인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35. 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방식으로 기재)
36. 대리인 국적 : 거래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 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 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라고 기재)
37.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거래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란에 기재한다.

III-2는 계좌방식 거래의 경우에 관련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이는, '30.거래종류'가 '□계좌'인 경우에 기재한다.

38. 관련계좌번호 : 계좌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거래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는 'IV'에서 별도로 기재한다.
39. 계좌개설영업점명 : 해당 계좌의 개설점(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한다.
40. 계좌개설일자 : 계좌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연월일을 기재한다.

이는 계좌의 이월발행일이 아닌 최초 계좌개설 연월일을 기재한다.

41. **계좌개설대리인 존재 여부** : ‘38.관련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2)

42.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43.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44.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44.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43.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45.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 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 방식으로 기재)
46.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47.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B☐기타 란에 기재한다.

III-3는 ‘30.거래종류’가 ^A☐비계좌(^C☐유가증권)^B인 경우, 관련 유가증권 정보를 기재한다.

48. **관련유가증권의 종류** :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류를 선택한다.
49. **관련유가증권번호** : 관련된 유가증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유가증권이 1매일 경우 또는 관련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각각 1매의 유가증권 번호별 보고서가 생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유가증권번호와 마지막 유가증권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다.

III-4는 '48.관련유가증권의 종류'가 '□자기앞수표'인 경우로서, 자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타행발행 정액자기앞수표를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건에 한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50. 현금지급은행명 :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한 은행명을 기재한다.

51. 현금지급영업점명 : "자기앞수표실시간 정보교환규약"에 의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현금을지급한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IV.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된 거래가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송금되었을 경우(무통장입금 의뢰의경우로 비계좌 영수의 경우)에 송금 받는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만일 거래자가 본인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경우에는 송금인으로서 거래자이자 수취인에 해당하므로 'II. 고액현금거래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IV. 수취인 계좌에 관한정보' 항목에도 기재한다.)

52. 수취인계좌번호: 송금 받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53. 수취금융기관명 : 수취한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보고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기재한다.

54. 수취인(수취계좌주) 성명 : 송금 받는 수취인(수취계좌주)의 성명을 기재한다.

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정보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발생한 금융거래의 취소 또는 정정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청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오조작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당일자로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그 종사자의 오조작 등 과실로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다. 본 난은 위와 같은 취소,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다. '표제부'의 '취소/정정시 종전문서번호'를 포함하여 표제부의 모든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취소 또는 정정사유 :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예: 금융기관 직원의 기기 오조작 등)

<별지 제2-1호 서식>

표제부

1) 문서번호 : -

2) 보고일자 :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카지노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Currency Transaction Report by Casinos)

2008.12

본 보고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2. 보고책임자명	
3. 보고담당자명 ^{주1)}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1) 카지노의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II. 고액현금 거래자에 관한 정보

5.거래자명			
6.거래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 ² ☐ 여권번호 ³ ☐ 외국인등록번호 ⁴ ☐ 국내거소신고번호 ⁵ ☐ 기타(기재_____)		
7.거래자 실명번호			
8.거래자 우편번호/주소*	()		
9.거래자 전화번호*			
10.거래자 국적 주2)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¹⁰⁻¹ ☐ 생년월일(YYYYMMDD)	¹⁰⁻² 성별(☐ 남 ☐ 여)

주2) 10. 거래자 국적이 외국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 생년월일, 성별은 필수사항

III. 현금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11. 거래발생일시			
12. 거래채널	¹ ☐ 출납창구 ² ☐ 계입대어본 ³ ☐ 기타(기재_____)		
13. 거래수단	☐ 현금 ☐ 수표 ☐ 기타	14. 거래금액	(원좌)\
15. 거래종류	¹ ☐ 웹스환권 ² ☐ 웹스구매		
16. 거래대리인존재 여부	¹ ☐ 존재 ² ☐ 존재안함 ³ ☐ 파악안됨		

첨부(III-1). 거래대리인 정보

17. 거래대리인명			
18. 거래자와의 관계	¹ ☐ 카지노관광 알선업자 ² ☐ 여행가이드 ³ ☐ 직원 ⁴ ☐ 동료(친구) ⁵ ☐ 기타(기재_____)		
19. 대리인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 ² ☐ 여권번호 ³ ☐ 외국인등록번호 ⁴ ☐ 국내거소신고번호 ⁵ ☐ 기타(기재_____)		
20.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21. 거래대리인 전화번호* ^{주2)}			
22. 거래대리인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주1) '16.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생성

주2) 21. 거래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IV. 취소 또는 정정보고에 관한 사항*

23. 취소 또는 정정사유 ^{주4)}

주4) 23.취소또는정정사유 항목은 이미 보고된 권을 취소 또는 정정하는 보고인 경우에 해당하며, 500자 이내로 기입함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고액현금거래보고서 작성방법]

1. 목 적

2007년 12월 2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하여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등을 대신하여 쓰이는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와 교환하는 것을 금융거래로 간주함으로써 카지노 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작성 안내는 카지노 사업자의 고액 현금거래보고서의 작성시 각 항목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제3호의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출납창구"라 함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창구를 말한다.

2.1.4 "게임테이블"이라 함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

2.1.5 "칩스환전"이라 함은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1.6 "칩스구매"라 함은 거래자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 및 거래자의 확정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당해 카지노사업자와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자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칩스를 교환함에 있어 거래건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한다.

3.3 보고의 시기

고액현금거래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 4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대상 금융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분석과 고액현금거래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거래발생일 익영업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것을 권장한다.

3.4 보고의 방법

보고를 하는 금융기관등은 고액현금거래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카지노 고액현금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카지노 고액현금거래보고서"는 총 2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거래자에 관한 정보,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4.1 표제부 작성

1)~3)은 보고서의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 2008-일련번호)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자세한 내용은 "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정보"부분을 참조) 종전에 보고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4.2 혐의거래보고 내용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와 다른 법률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한다. 전산서식에는 보고기관의 기관고유 코드(Code) 기재한다.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보고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현금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등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5. 거래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6. 거래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6-5. ⁵□기타의 의미 : 거래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⁴□주민등록번호 ~ ⁴□국내거소신고번호’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7. 거래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 우편번호/주소 : 거래자의 자택 우편번호((-)에 기재) 및 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9. 거래자 전화번호 : 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서울의 503-6792 경우, ‘02-503-6792’로 기재)

10. 거래자 국적 : 고객현금거래자의 국적을 ¹□한국, ²□외국’ 중 선택하여 기재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국명:____)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10-2-1) 생년월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10-2-2) 성별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III. 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11. 거래발생일시 : 현금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분을 기재한다.(예 : yymmddhhmm)
12. 거래채널 : 현금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¹☐출납창구 ²☐게임테이블 ³☐ 기타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13. 거래수단 : 현재는 보고범위가 현금 또는 권면액 100만원 초과 수표로 한정되므로 거래수단은 ¹☐현금 또는 ²☐수표로 한정하여 보고한다.
14. 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을 최소단위(원단위)까지 기재한다.
15. 거래종류 : 현금의 물리적 이동 방향에 따라 ¹☐칩스환전 ²☐칩스구매로 나누어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기재한다.
16.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I(현금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¹☐존재 ²☐존재안함 ³☐파악안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¹☐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첨부(III-1)는 III의 16.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17. 거래 대리인 명 : 거래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을 기재한다.
18.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자와 거래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한다.
19. 거래 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20.거래대리인 실명 번호'에 기재된 실명번호를 확인한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20. 거래 대리인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 대리인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1. 거래 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 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22. 거래 대리인 국적 : 거래 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 국가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한다)

IV. 취소 또는 정정 보고에 관한 정보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의 취소 또는 정정 등이 있는 경우라도 고액 현금거래의 보고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고객의 요청 또는 카지노 종사자의 오조작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당일자로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 금융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카지노는 그 종사자의 오조작 등 과실로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보고된 사항의 취소 또는 정정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할 수 있다. 본 난은 취소,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다. '표제부'의 '취소/정정시 종전문서번호'를 포함하여 표제부의 모든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23. 취소 또는 정정사유 : 금융기관등이 금융거래가 발생한 익일 이후에 이미 고액 현금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정 사유를 500자 이내로 기재한다.(예 : 금융기관 직원의 기기 오조작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서		
금융기관등 명 :		
	신 보고책임자 ¹⁾	구 보고책임자 ¹⁾
성 명		
직 위		
소 속 부 서		
임 명 일 자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주 소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직위 성명 (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주 : 1) 보고책임자가 복수인 경우 칸을 나누어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6. 27.>

1.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 고 사 항	②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복수 선택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고인 관련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합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 가능

5.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7.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안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2.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신규 / □변경 / □갱신)					
① 신 고 인	명칭(상호)		사업자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본점(외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국내 사업장	대표자 성명	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 등) :	국적 :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신 고 사 항	② 대표자 및 임원(동기 임원) 현황				
	임원 수: 명				
	직위	성명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	조치내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③ 대주주 현황				
	대주주 수: 명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항목				선택(○)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복수 선택 가능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발급확인자*	은행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발급담당자*	은행명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인원수 등)	1. 2. 3.

* 발급확인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으로 하고 발급담당자는 부서장급 이상으로 기재

⑥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구 분	내 용
발급처	
유효기간	
인증번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1 등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금융정보분석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고인 관련

-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1부
-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마.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2. 대표자·임원 및 대주주 현황 관련

가.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추진계획서 관련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가상자산 취급 및 관리 지갑주소 목록 1부

4.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관련

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1부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계약서 1부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합박자금조달 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한 서류(평가항목별 세부내용, 세부 산정내역을 포함한 항목별 배점 등 포함)

※ 다목에 따른 서류는 위험평가를 실시한 금융회사등이 FIU에 직접 제출 가능

5.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구축 관련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7. 기타

가. 신고인·대표자·임원 확인서

※ 변경신고시 신고서 작성 방법

1. 신고서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

2. 첨부서류

- 이사회 의사록 등 변경신고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위임 관계 서류)
- 변경신고 관련 증빙

※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시행 2026. 1. 22.] [고시 제2025 - 2호, 2025. 10. 22.,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02 - 2100 - 1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15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령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 중 제1편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에 적용되고, 제2편은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1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제2장 내부통제 구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4조(이사회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3. 대표이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을 포괄하여 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체계[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금융회사등의 경우 계열회사와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부통제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취약점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제5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2. 업무지침 제정·개정·폐지 안전의 이사회 상정(법규 개정 등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업무지침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및 세부 업무지침 승인
3.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유지
4.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5. 다음 각 목의 기준(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른 직을 겸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를 임명

가. 자격요건(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

- 1)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에서 2년 이상(자금세탁방지등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고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금융정보분석원,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검사수탁기관에서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직위

-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사목부터 아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 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등: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이상
- 3) 1)과 2)에 속하지 않는 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

6.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통제·절차에 관한 사항
7.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준법감시인등을 보조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제5조의2(준법감시인등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은 준법감시인등에게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등을 둘 법령상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등은 제2항제1호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감독
2.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체적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 업무지침의 마련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등에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견된 취약점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다만,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등이 점검·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8.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9.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 ⑥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연수 실시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제9조(교육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10조(정의) 직원알기제도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절차수립 등) ① 금융회사등은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12조(정의 등)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주체) ① 금융회사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주기) 금융회사등은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이행수준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방법 및 범위) ① 금융회사등은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에 대해서는 실지감사·서면·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제16조(결과보고 등) 금융회사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신상품 등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제17조(절차 수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식별하고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위험요소를 관리·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자체 및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2.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새로운 기술 및 지급·결제 수단의 이용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제6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제18조(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관리수준 평가) ① 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이하 "위험평가등"이라 한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문서화
2. 전반적 위험의 수준과 위험의 완화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수준과 종류를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을 고려
3. 위험평가등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
4. 위험평가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축
5.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내용을 위험평가등에 반영

② 금융회사등은 자신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경영진의 승인을 거친 정책·통제·절차(이하 "통제등"이라 한다)를 구비
2. 통제등의 시행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제등을 강화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에 대해 강화된 조치 수행
4. 제17조 및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 수립·운영 사항 반영

③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사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에 상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위험관리수준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방법 및 기한 등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험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고 감독, 검사 및 교육에 활용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검사의 강도 및 빈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각 금융회사등의 위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 정책, 내부통제 및 절차 위험
2. 국가위험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3.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
4. 금융회사등의 특성. 특히 금융회사등의 다양성, 수,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허용된 재량의 수준

⑦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장은 주기적인 자금세탁방지행위등과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등에 기반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회사등의 경영 또는 운영 관련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시에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20조(정의) ①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외국인인 고객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 라 한다)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41조부터 제42조 및 제4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등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따른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말한다.

⑤ 금융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한다(금융회사등이 신탁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

행하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는 수탁인으로서의 지위를 금융회사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21조(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제2절 적용대상

제22조(계좌 신규 개설)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 펀드 신규 가입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6.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23조 (일회성 금융거래) ① 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불합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5. < 삭제 >

② 제1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① <삭 제>

② <삭 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45조에 따른 100만원 초과와 전신송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송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기존고객) ① 금융회사등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 <2008. 12. 22.>하기 이전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거나 거래를 한 고객(이하 ‘ 기존고객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객확인을 하여야 할 적절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높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2. 고객확인자료 기준이 실질적으로 변한 경우
3. 계좌운영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4.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고객확인을 통해 새로 고객이 된 자가 그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고객에 대하여 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인수 및 합병) 금융회사등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객확인 관련기록을 입수하고 피인수기관으로부터 법 제5조의2에 의한 고객확인 이행을 보증받은 경우
2. 제1호의 고객확인 관련자료에 대한 표본추출 점검 등을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 등) ① 금융회사등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점 또는 자회사(이하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이라 한다)의 자금세탁방지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FATF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외지점등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국내법과 현지법상의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소재국의 법령 및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현지 국가의 자금세탁방지등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경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 평가

제28조(위험 평가)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 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검사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국가위험) ① 금융회사등은 특정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 - 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 - 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제30조(고객유형 평가)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 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제31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 보험계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③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제4절 이행시기

제32조(원칙)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지정시 및 금융회사등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예외) ① 금융회사등이 영 제10조의6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고객확인 시기가 도래한 이후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이 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확인을 이행할 것
2. 금융회사등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3. 고객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회사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 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5조(비대면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비대면에 의해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6조(고객공지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취하는 조치 등

제5절 고객확인 및 검증

제37조(원칙)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법인 및 단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신탁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법인·단체’ 이라 한다] 고객에 대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지배구조 및 통제구조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38조(신원확인)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 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 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 ③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①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금융실명법 ’ 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법인·단체 고객의 검증 등) ① 금융회사등이 검증하여야 하는 법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제20조제2항에 따른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 금융회사등은 법인·단체 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실제당사자)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 실제소유자 ’ 라 한다)이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는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인·단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대표이사·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 등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①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 거래자금의 원천
3. 거래의 목적
4.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④ 금융회사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3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대리인,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나 목에 따른 "실제소유자" 및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제69조 각 호에 따른 FATF지정 위험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②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4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누설 금지)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나, 고객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비밀 누설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절차를 중단하고,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절 전신송금

제45조 <삭 제>

제46조(전신송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3 및 영 제10조의7에 따라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 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제47조(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 ① 송금금융회사등은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회사등 또는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2. 송금인 및 수취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삭제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인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금융회사등의 명칭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② 해외 송금시 금융회사등이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개의 송금을 묶음 형태로 일괄 송금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 ① 중개금융회사등은 송금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이하 "전신송금정보"라 한다)를 수취금융회사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제약 등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공이 어려운 중개금융회사등은 수취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방법으로 전신송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개·수취 금융회사등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정보가 누락된 전신송금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송금금융회사등에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할 것인지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기반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 <삭 제>

제50조(관련정보의 보관) 송금금융회사등·중개금융회사등·수취금융회사등은 전신송금정보를 당해 거래 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예외) <삭 제>

제7절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

제52조(정의) 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 제>

제53조(이행요건) 금융회사등이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것
2.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 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것
3.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것
4.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

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제54조(최종책임) 제52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다

제4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55조(정의) ①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이란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6조(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금융회사등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환거래계약

제57조(정의) 환거래계약이란 은행(환거래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환거래서비스)를 국외의 은행(환거래요청은행)의 요청에 의해 제공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주의의무 등) ① 환거래은행이 제57조에 따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환거래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 또는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은행(이하 ‘위장은행’이라 한다)과 제57조에 따른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③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제2항에 따른 위장은행의 계좌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9조(환거래계약 조치 등) ① 환거래은행은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환거래요청은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의 지배구조, 주요 영업활동, 주된 소재지(또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영업 또는 사업 성격을 확인
2. 입수 가능하거나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환거래요청은행의 평판,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조사 또는 규제대상 여부 등의 감독수준 평가
3. 환거래요청은행이 주로 소재하는 지역(또는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등의 조치와 환거래요청은행의 자금세탁방지등의 통제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4. 환거래은행 및 환거래요청은행간 자금세탁방지등 각각의 책임의 문서화

② 환거래은행은 환거래요청은행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거래계좌를 직접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대리지불계좌’라 한다)가 환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거래요청은행이 대리지불계좌를 통해 거래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2. 환거래요청은행은 환거래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신원확인 및 관련된 정보의 제공

제60조(환거래계약 승인) 환거래은행은 새로운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

제61조(정의 등) ①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강화된 고객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되었거나 신규로 편입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제63조(모니터링) ① 금융회사등은 위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위 제61조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제64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제65조(확인 절차) 금융회사등은 고객 또는 실제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6조(고위경영진의 승인) 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제67조(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국적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68조(모니터링) ① 금융회사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절 FATF 지정 위험국가

제69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 - 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 - 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제70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개인, 법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 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1조(거래목적 확인 등) ① 금융회사등은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2조(대응조치) ① 금융회사등은 제69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관련 국가의 위험에 상응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FATF 국제기준에 따른 대응조치를 포함한다)를 취하도록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독립적 감사 강화 등
 2.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제52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금지
 3.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리지불계좌 개설의 금지 등
 4. 금융회사등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요구
 5. FATF 지정 위험국가에 금융회사등이 자회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
 6. FATF 지정 위험국가 또는 그 국가에 있는 자와의 거래관계 또는 금융거래를 제한
 7. 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한 금융회사등과의 제휴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

제6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제73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② <삭 제>

③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4조(강화된 고객확인) 금융회사등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5조(모니터링) ① 금융회사등은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제76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제77조(비정상적 거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잔액 규모에 비해 예금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3.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민사상책임의 면책) 법 제4조제7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란 민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78조(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제79조(결과 분석 등) 금융회사등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분석내용의 정보화

제80조(분석자료 보존)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체제 수립

제81조(보고체제수립)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2조(내부보고체제) ① 금융회사등이 제81조에 따라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② 금융회사등이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외부보고체제) 금융회사등은 제81조에 의해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자료 보존

제84조(보존기간)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5조(보존대상) ①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②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 금융회사등이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고액현금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5.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자료
6.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 운영, 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86조(보존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등은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 ③ 금융회사등은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5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7조(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2편 카지노사업자

제8장 내부통제 구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88조(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89조(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9조의2(준법감시인등의 역할 및 책임)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90조(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91조(교육·연수 실시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②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교육내용) ① 카지노사업자는 직위 또는 담당 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제93조(교육방법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91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집합, 전달,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그 일자·대상·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94조(정의) 직원알기제도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95조(절차수립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96조(정의 등)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7조(주체) ① 카지노사업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96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의 내부부서(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한다)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주기) 카지노사업자는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방법 및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실시하는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수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평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제100조(결과보고 등) 카지노사업자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9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

제101조(위험관리수준 평가)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9장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102조(정의) ① 고객확인이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② 간소화된 고객확인이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 중 일부(제115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 외국인인 고객이 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행위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115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제117조부터 제118조 및 제10장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작성·운용하는 업무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따른 업무지침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에 포함하여 작성·운용할 수 있다.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제2절 적용대상

제104조 (일회성 금융거래)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거래 건별로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를 말한다.

제105조(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 평가

제106조(위험분류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위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③ 카지노사업자는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7조(국가위험) ① 카지노사업자는 국가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 - 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 - 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5.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제108조(고객유형 평가)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카지노사업자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제109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카지노사업자는 상품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4절 이행시기

제110조(원칙) 카지노사업자는 영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예외) ①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업무의 특성 및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후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12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카지노사업자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 ③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제113조(고객공지의무)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카지노사업자가 취하는 조치 등

제5절 고객확인 및 검증

제114조(원칙)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5조(신원확인) ① 카지노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② 카지노사업자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① 카지노사업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3. 외국인에 대해 여권 등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 ③ 카지노사업자는 개인고객이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는 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7조(실제당사자) 카지노사업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8조(추가 확인정보의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할 추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카지노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③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에게 부당한 권리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9조(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① 카지노사업자는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3. FATF에서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및 이행 취약국가의 국적자(개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
 4.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 리스트
 5.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②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제1항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0조(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보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121조(정의) ① 자금세탁행위등의 고위험군이란 제108조제2항에 따른 고객 또는 제109조에 따라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2조(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 카지노사업자는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및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제12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특별 고객

제123조(정의 등) ① 제108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카지노사업자로부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카지노사업자로부터 별도 게임장 제공 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카지노사업자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강화된 고객확인)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하여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제125조(모니터링) ① 카지노사업자는 위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위 제123조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업무상 또는 조직체계상 금융거래 승인부서와 독립된 부

서의 상위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제126조(정의 등) ①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일반적으로 사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 그의 가족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제127조(확인 절차) 카지노사업자는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8조(고위경영진의 승인) 카지노사업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9조(강화된 고객확인) 카지노사업자는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때에는 제102조제3항에 따라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재산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제130조(모니터링)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절 FATF 지정 위험국가

제131조 <삭 제>

제132조(특별 주의의무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33조(거래목적 확인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명확한 경제적 또는 법적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거래의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4조(대응조치)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31조에 따른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②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절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

제135조(정의 등) ①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② <삭 제>

③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6조(강화된 고객확인) 카지노사업자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거래등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금융거래등을 할 때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7조(모니터링) ① 카지노사업자는 이미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고객이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는 공중협박자금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 고객과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거래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1장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제138조(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방법 등
2. 거래점검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제139조(비정상적 거래 등) ①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 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거래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2. 거래가 정상적인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

-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카지노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 등과 같은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수집, 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 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이력 비교 및 검토
2.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3.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4. 고객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제141조(결과 분석 등) 카지노사업자는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
2. 과거 금융거래, 신용정보, 기타 정보 등을 활용한 거래 분석
3.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고객의 최신 정보 갱신
4. 분석결과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5. 분석 완료 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내용 정보화

제142조(분석자료 보존)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장 보고체제 수립

제143조(보고체제수립) 카지노사업자는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4조(내부보고체제) ① 카지노사업자가 제143조에 따라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② 카지노사업자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소규모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외부보고체제) 카지노사업자는 제143조에 의해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장 자료 보존

제146조(보존기간) ① 카지노사업자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 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47조(보존대상) ① 카지노사업자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② 카지노사업자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의 게임일자, 게임종류, 환전일자 및 금액, 칩스 구매일자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기타 관련 거래내역 등의 사본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③ 카지노사업자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에 대한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④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료 외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148조(보존방법) ① 카지노사업자는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카지노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147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는 제외한다.

제149조(보존장소) 카지노사업자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15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10-1호, 2010. 6. 21.>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 - 3호,2010. 12. 28.>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 - 20호,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 - 2호,2019. 6. 26.>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1호,2023. 3. 2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 - 2호,2024. 11. 12.>

이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 - 2호,2025. 10. 22.>

이 고시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2026. 2. 19.] [고시 제2026-1호, 2026. 2. 19.,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02 - 2100 - 17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감독원장인 경우에는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규"란 법, 영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제재"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검사수탁기관의 장 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구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검사원"이라 함은 검사수탁기관의 장(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및 제재의 주체인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를 운영원칙 등) ①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거래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감독·검사 정책의 범위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전항에서 규정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분석원 등 행정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2.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규정 제1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3. 금융회사등이 업무규정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업권 및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검사운영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검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 운영

제5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그 밖에 관계 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그 밖에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해당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4. 그 밖에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제6조(검사실시)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연간 검사계획(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전분기 검사실적(검사대상 금융회사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실적을 말한다)과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의 사전통지)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장부·서류 등의 조작·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제8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준법감시인 등

(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조력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 실시 상황 및 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업무를 효율적 수행)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범위 및 횟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검사 실시 후 조치

제1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회사등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와는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는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유의사항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에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등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주의사항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다.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유의사항 : 6개월 이내

2. 제2호 내지 제3호의 조치요구사항 : 3개월 이내

제4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제1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14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고도 해당营业을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 가.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 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금융회사등이 제4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기관경고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또는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위법·부당행위가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3) 위법·부당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 (4) 위법·부당행위가 금융거래자의 금전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관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및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 직무정지(6개월 이내)

-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 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 업무의 정직(6개월 이내)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견책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위법·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하는 조치의 양정

을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는 각각 면직, 업무의 정지, 감봉, 견책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19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4조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금융회사등이 최근 3년 이내에 4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관련 법규를 다시 위반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2조(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 사실상 이사,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재절차

제23조(제재절차) 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결정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조치안을 작성하여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

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한 제재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4조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치를 결정한다. 다만, 위 심의 결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해야 할 제재의 종류로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취지대로 조치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의견청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수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
2.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3.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4. 정보분석심의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준법감시 업무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금융 또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금융정보분석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및 기타 검사수탁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심의회의 운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4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2인 이상
2.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불복절차)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③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의2(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29조(검사수탁기관 협의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이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세부지침의 마련)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 - 1호, 2018. 7. 12.>

이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 - 2호, 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 제38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3 - 2호, 2023. 8. 1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3호, 2023. 9. 1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 - 4호, 2023. 12. 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 - 3호, 2025. 12. 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 - 1호, 2026. 2. 1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과태료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법률상 최고한도액"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제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정최고금액"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 (1) 예정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고 한다)로 산정한다.
- (2)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나.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예정금액의 산정

예정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법정최고금액에 예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위반행위의 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반결과의 구분기준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4조의2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동기 위반결과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고의	과실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20%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4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15%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3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1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20%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5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30%

다.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동기	
고의	과실
법정최고금액의 100% 이하	법정최고금액의 60% 이하

3.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 (3), (4)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 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3)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당해 금융회사등이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위규사실을 계속적으로 적발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법제할 수 있다.

(2)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보고를 지체하거나,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금융회사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금융회사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회사,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8호, 11호부터 15호까지의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회사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일반회사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중 위 (가) 금융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개인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공무원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실제 자금세탁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전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가상자산업감독규정
4.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5.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6.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7.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 - 2100 - 1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몰수·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8.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563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 3. 12.>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호나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1호하목”을 “제2호”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부칙 <제20372호, 2024. 3. 12.> (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 - 2100 - 16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

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예치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할 것

가.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다.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예치·신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예치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우선하여 지급할 것
 - 가.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것
 - 나. 다음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
 - 1) 예치금의 지급 시기 및 장소
 - 2)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 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다. 가상자산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가상자산의 보관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
 4. 그 밖에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제12조(보험사고의 범위)** 법 제8조에서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종류·수량 및 금액
 -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제14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5조(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2.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4.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6시간. 다만, 공개된 시점이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공개된 날의 18시부터 공개된 날의 다음 날 3시 사이인 경우에는 공개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으로 한다.
5.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공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한 정보: 공개된 때부터 1일
 - 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 나.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가상자산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그 내용을 공개한 날까지를 말한다) 계속적으로 게재했을 것
6.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경과한 때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가. 가상자산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 2) 가상자산 취득 사유
- 3)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 4)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나. 가상자산 처분계획

2.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제17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 가상자산사업자

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3.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가상자산거래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6.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이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8조(이상거래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가상자산시장에서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9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자
3. 관리기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5.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가상자산사업자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한도,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할 것
2.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 나.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 다. 위반행위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기간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4.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 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4. 22.>

1.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검찰총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2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조사·요구·조치 및 공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파기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무
- ③ 관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예치·신탁된 예치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제5장 벌칙 등

제27조(부당이득 산정방식)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4658호, 2024. 7. 2.>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2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4. 22.>

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산정방식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위반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로 얻은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 미실현 이익 및 위반행위로 회피한 손실액(이하 "회피손실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 또는 개인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犯意)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뤄진 경우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모두 합산한다.

마.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

바.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과 전체 위반행위기간 동안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의 개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행위(이하 "외부요인"이라 한다)로 인한 시세 변동이 결합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다만, 외부요인이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거나 위반행위자가 해당 외부요인을 위반행위에 이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가상자산 지수[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가상자산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말한다]에 의해 시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세 변동분을 부당이득액에 포함한다.

1)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

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

2)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을 초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3)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2분의 1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4) 외부요인에 의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에 준하는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 전부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3분의 2를 반영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사. 위반행위로 발생한 이익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대상시점의 해당 가상자산 시세(부당이득이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해당 가상자산 시세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위반행위로 발생한 이익이 외화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음에서 정한 시점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1) 실현이익, 회피손실액: 실현이익, 회피손실액 각각의 산정 대상 거래 종기(終期)

2) 미실현이익: 제2호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시점

2. 개별기준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경우

1)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개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실현이익}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times \text{매매일치수량} - \text{거래비용}$$

- 2)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미실현이익} = (\text{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times \text{보유수량} - \text{거래비용}$$

- 3) 회피손실액은 위반행위자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개시한 시점부터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이후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후 하락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시점까지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 전에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최종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으로 보되,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이 형성된 시점 전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를 한 경우에는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은 0원으로 한다.

$$\text{회피손실액}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text{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 기준가격}) \times \text{매도수량} - \text{거래비용}$$

나.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경우

-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를 개시한 시점부터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종료한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시세조종기간"이라 한다)에 매매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실현이익}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 단가}) \times \text{매매일치수량} - \text{거래비용}$$

- (1)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전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위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2)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이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의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을 매수단가로 하여 산정한다. 나)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2)에 따른 매수단가를 산정할 때 위반행위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이거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직접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보유한 수량과 실제 취득단가를 반영하여 매수단가를 보정한다.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 및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할 것을 예정하고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text{미실현 이익} = (\text{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가상자산의 가격}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수단가}) \times \text{보유수량} - \text{거래비용}$$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의 기준가격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상자산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

가) 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에 매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실현이익} = (\text{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 - \text{시세조종기간 중의 가상자산 최저기준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text{매매일치수량} - \text{거래비용}$$

나) 미실현이익은 위반행위자가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미실현이익} = (\text{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가상자산 최종가격} - \text{시세조종기간 중의 가상자산 최저기준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times \text{보유수량} - \text{거래비용}$$

다) 제1호나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의 최종가격은 시세조종기간 중의 가상자산 최저기준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통해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되,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상자산 기준가격은 시세조종행위금지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상자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경우

-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바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 2) 1)을 제외한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 3) 2)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거래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수단가를 산정한다.
 - 가)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례의 매수단가
 - 나) 부정거래행위금지 위반행위 직전에 해당 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상자산의 금액.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매수단가를 0원으로 한다.

라.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제1호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 양태와 유사한 위반행위 양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기준가격"이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을 말한다.
2. "가중평균 매도단가"란 실제 매도가액을 매도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3. "가중평균 매수단가"란 실제 매수가액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한 단가를 말한다.
4. "매매일치수량"이란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을 말한다.
5. "거래비용"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지출한 매매수수료 및 그 밖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든 비용(미실현이익 산정 시 예상되는 거래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자 등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6. "보유수량"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 가.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수량: 위반행위자가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고기준가격이 형성된 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
- 나. 제2호나목1)나) 및 같은 목 2)나)에 따른 보유수량: 시세조종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가상자산시장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1호	3,000
나.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2호	3,000
다.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3호	10,000
라.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법 제22조	3,000

생성·보존 또는 파기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5호	3,0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6호	6,000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7호	6,000
아. 법인인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8호	10,000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2조 제1항제8호	6,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시행 2024. 7. 19.] [고시 제2024 - 37호, 2024. 7. 10., 제정]

금융위원회(가상자산과)02 - 2100 - 165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조(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8조제2항제2호나목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 - 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예치금 상계·압류 등 금지의 예외) 영 제9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7조(예치금의 우선지급 공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우선지급 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관리기관이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미지급이용자예치금의 지급 방법)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예치금이용료는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미지급예치금이용료"로 한다.

제9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영 제11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을 통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할 것
2.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만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2. 준비금 적립
 3.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금전의 예치 또는 신탁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금전을 예치·신탁하는 경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1조(검사 방법·절차 등의 준용)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운용대상
2.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보관비율
3. 제10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 등 기준

부칙 <제2024 - 37호, 2024. 7. 10.>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4. 7. 19.] [세칙 제9999호, 2024. 7. 19., 제정]

금융감독원(가상자산감독총괄팀)02 - 3145 - 816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 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상자산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등)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 및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출금 차단사실 보고
 2. 영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보고
-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영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9999호, 2024. 7. 19.>

이 세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시행 2024. 12. 28.] [고시 제2024 - 37호, 2024. 12. 28., 일부개정]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044 - 204 - 348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지정기간	비고
두나무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22.1.1.~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2.1.1.~	
주식회사 코빗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22.1.1.~	
주식회사 코인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2.1.1.~	
주식회사 스트리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25.1.1.~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 58호, 2021. 1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 - 37호, 2024. 1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 2026. 4. 15.] [고시 제2026 - 13호, 2026. 4. 15.,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상자산과)02 - 2100 - 1657
금융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02 - 2100 - 2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법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장 총칙을 준용한다.

제3조(이상거래에 대한 조치) ①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2.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에 대하여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3.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4.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상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2.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제12조제2항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동행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 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 원인, 성질,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받은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
 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8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 및 제5호·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6.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 - 1호, 제4 - 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 - 1호, 제5 - 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

- 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영치한 물건등 중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 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 - 1호, 제8 - 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가상자산의 종류、종목、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8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금융위원회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
 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반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 ② 증거 인멸·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할 때 안전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2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영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금융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수사당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
 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3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보고요지
2. 조사착수
3. 조사의 범위
4. 조사의 전말
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개황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2절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가조심"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둔다.

②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가조심 위원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가조심의 구성) ① 가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가상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6.04.15.>

② 가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가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조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조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26조(가조심의 운영) ① 가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조심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조심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가조심의 매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4.15.>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신설 2026.04.15.>
 2.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 중 가조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신설 2026.04.15.>
- ③ 가조심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6.04.15.>
- ④ 금융위원회 담당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가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가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및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가조심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가조심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조심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⑧ 가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⑨ 회의에 참석한 제25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7조(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위법행위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시정명령)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 해관계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1조(경고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주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조치의 병과)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조치의 가중·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6.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에게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가조심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제41조(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0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이하 "가조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가조협의 구성) 가조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가조협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담당 부원장보
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제43조(가조협의 임무) 가조협은 조사기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또는 시장감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조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조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가조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조협 위원장이 가조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가조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5조(조사기관간 역할분담) ① 조사기관의 조사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시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
 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자인 경우
 3.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조사 착수내역은 가조협에 보고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조사의 방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조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가조협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 대상 종목
 2. 조사 착수 일시

3. 조사대상자
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
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

제46조(기밀유지) 가조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가조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가조협 위원장은 가조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그 임직원 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
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53조(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17조 및 제19조, 영 제22조,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4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행,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주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
 2.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안전상정 요청
 3.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 ② 제2조에 의해 준용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조 및 제5조, 이 규정 제5조, 제6조, 제2장, 제23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⑤ 이 규정 및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4 - 38호,2024. 7. 10.>

이 고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 - 10호,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조사결과 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26 - 1호,2026. 1. 2.>

이 고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 - 13호,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I. 조사원의 사명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가상자산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II. 조사자세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은 법령·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조사원은 종목별 가격·거래량·매매동향·보도·공시내용 및 풍문 등 정보사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조사원은 조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조사원은 위법행위의 동기·원인·방법·결과 등에 유의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7. 조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조사원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조사원은 조사관련 비밀의 누설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조사자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원은 조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 등 자료요구대상기관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1. 조사원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III. 조사예절

1.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고,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겸손한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IV. 금지사항

1. 조사원은 조사를 빌미삼아 청탁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조사자 및 자료요구 대상 기관등으로부터 사례·증여·향응 등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적인 용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피조사자등과 접촉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와 금전대차·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제2호] <개정 2026. 1. 2.><개정 2026. 4. 15.>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17조,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 (1) 과징금 부과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3)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 (5)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라.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100분의 150	100분의 125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구분 \ 중요도	상	중	하
법 제10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받은 자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주1)}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주2)} 100회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이상 100회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50회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2억원 이상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위반 관련 해당 가상자산 총 매매금액 5천만원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주3)} 100% 이상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이상 100% 미만	위반기간 해당 가상자산 가격변동폭 25% 미만
법 제10조제4항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 / 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가격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기준가격(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0시, 8시 및 16시의 가격)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다만, 시세조종기간 중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그 기간 중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다만, 직전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가격)을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행위를 개시한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의 절대치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법제처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그 임직원·대리인인 경우
하향 조정 사유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과징금의 감면

- (1)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감경한다.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 과징금 산정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 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7.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법제처

(1) 판단기준

법 제17조제4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a.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b.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a. 거래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회사의 연쇄부도 우려 또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b. 중요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a.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 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 b. 부도 등 재무상황 악화를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8. 파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제3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법 제22조제1항제8호(법 제14조 위반에 한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 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영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 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가상자산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가상자산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

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나.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다.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라.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

[별표 제4호]<개정 2026. 4. 15.>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법규위반 결과]

가상자산시장에 미친 영향, 가상자산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 (1) 사회적 물의야기
- (2) 중 대
- (3) 경 미

나. 판단기준

(1) 법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동기 \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 물의야기	A	C	C

충 대	B	C	C
경 미	B	C	C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몰의야기	A	C	C
충 대	B	C	C
경 미	B	C	D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행위(이하 "시세조종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몰의야기	A	C	C
충 대	B	C	C
경 미	B	C	C

(나) 시세를 하락·방어한 경우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몰의야기	A	C	C
충 대	B	C	C
경 미	B	C	C

(3) 법 제10조제4항 위반행위(이하 "부정거래행위"라 한다)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결과 \ 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사회적몰의야기	A	C	C
충 대	B	C	C

경 미	B	C	C

(4)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사회적물 이야기	A	D
증 대	B	D
경 미	B	E

3. 조치기준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영 제22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2조에 따라 C(과징금)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①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③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④ 동일·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 (2)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제보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핵심인물을 포함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등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단서를 제공한 경우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 제5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제53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제27조 및 영 별표 1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 채무면제 등의 이익

다.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가목 및 나목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2의2.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부당이득액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 × (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

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
가중치	1.5	1	0.5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

구분	판단기준
상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중	-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하	-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3. 영 별표 1의 제1호바목 4)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 이상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외부요인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영향,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사건에 대한 조사회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사건번호			사건명		
조사구분					
조사기간					
사 유					
기 타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2×××년 × 월 ×일 00:00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및 필요시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1호 서식]

제 호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귀 하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별지 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2×××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서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진술서제출요구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4-2호 서식]

다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답 변
1.	1.
	년 월 일
	진 술 인 (인)

[별지 제5-1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2×××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자료제출요구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2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요구서를 제시하는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담당자 :

(연락전화 :)

20xx. xx. xx.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영 치 조 서

관계자 주소 :

성 명 : (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조사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시 동 번지 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하다.

20 . . .

조사원 : (인)

입회인 주소 :

성명 : (인)

※ 영치경위

[별지 제7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8-1호 서식]

현 장 조 사 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의 장소 (대상)
2.	현장조사의 목적
3.	현장조사의 참여인
4.	현장조사의 경위 및 결과

[별지 제8-2호 서식]

이 현장조사는	년	월	일	시	분에 시작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끝나다.
년 월 일					
조사책임자 :					(인)
조 사 원 :					(인)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귀 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자료를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

담당자 : 000

(연락전화 :)

금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문서번호		요구일자	
요구기관명		금융위원회	
요구자	근무부서	직책	성명
담당자			
책임자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제출시한		
	통보 유예	유예기간	
	유예사유		
특이 사항			
불 입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내용은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음.			

[별지 제11호 서식]

문 답 서

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등록기준지는

주소는

(전화번호 : _____)

직업은

입니다.

문

知

[별지 제12-1호 서식]

진 술 서

등록기준지 :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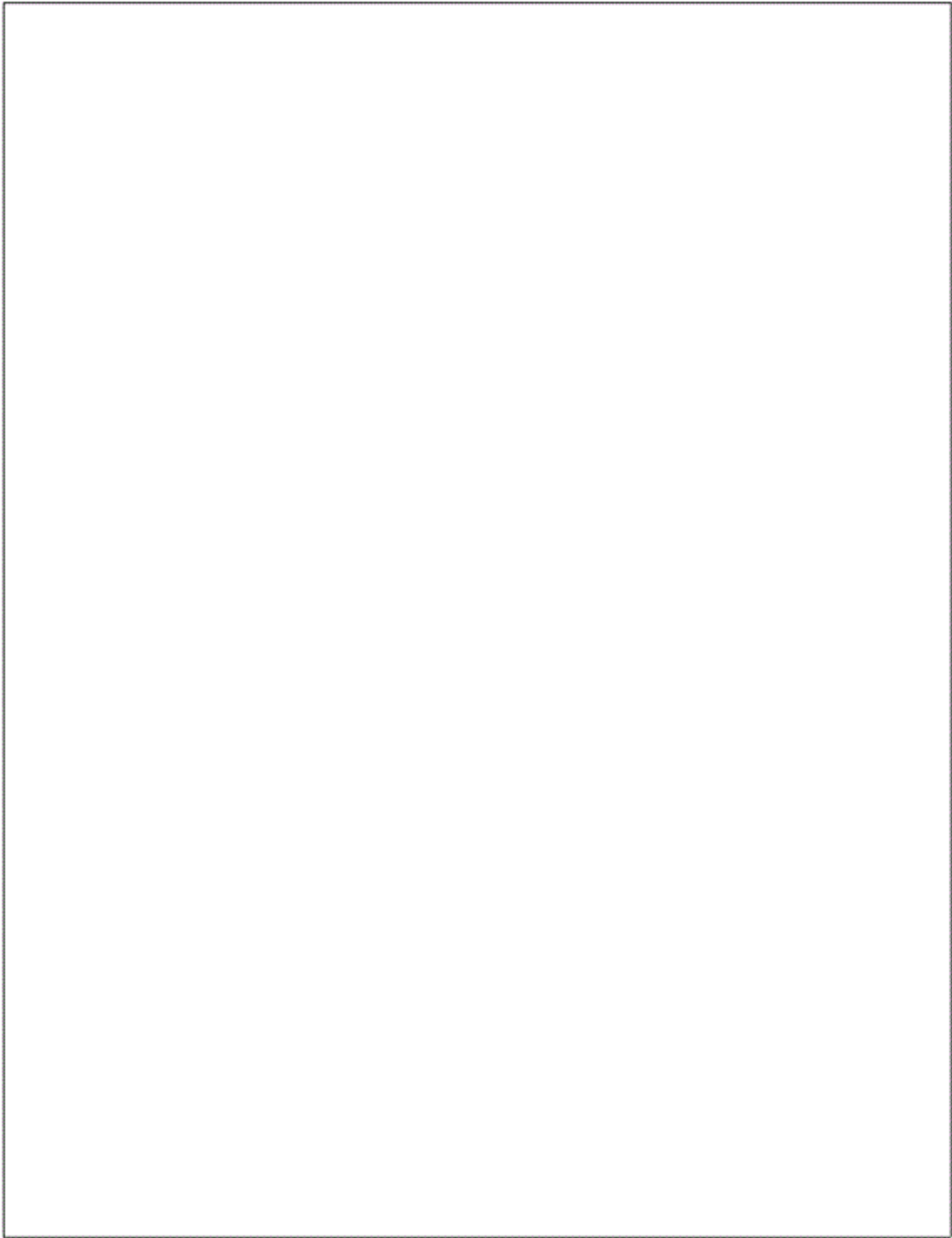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직업 :

위의 사람은 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별지 제12-2호 서식]



 년 월 일
진술인 (인)

[별지 제13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기관명		부서명 및 담당자	
	출	주소		전화번호	
	처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4. 7. 19.] [세칙 제9999호, 2024. 7. 19., 제정]

금융감독원(가상자산조사국)02 - 3145 - 71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약칭) ①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② "본조사"라 함은 규정 제2장에 따른 조사로서 예비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약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사원 및 조사의 회피) ① 감독원장의 명령 및 지시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조사회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조사회피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및 관할

제4조(사건의 수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사건기록표지의 여백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접수 · 배정 · 이첩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사건의 단위)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이미 수리하였거나 수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조사중에 있거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사건에 동일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1건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상자산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발행인과 관련되고, 동일 또는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2. 혐의자가 동일인이거나 혐의자중 상당수가 중첩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 ② 예비조사 사건은 본조사 사건과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사건의 배정)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한 사건을 부서 내의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제3장 사건의 조사

제7조(조사의 실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 수리 및 배정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9조(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예비조사 결과 작성하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는 규정 제23조를 준용하되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반의 편성)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중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소속부서의 직원으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반장을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품의) ① 조사원이 수리된 사건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실시품의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의 구분
2. 조사할 사항
3. 조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조사의 범위
5. 조사의 방법
6. 조사원 및 조사착수일
7. 실지조사 기간 및 소요비용
8.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실지조사가 필요하거나 제1항제7호의 실지조사 기간외에 추가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품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조사진행상황등의 보고) ① 조사반장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의 발견 등 조사진행상황을 수시로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담당사건의 조사진행상황 및 계획을 수시로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검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요구와 검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서 정하는 검사실시통보서는 규정 제8조에 따른 조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서식의 발급·관리) ① 감독원장은 출석요구서, 진술서제출요구서, 질문 답변서, 자료제출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등 규정 별지 제3호, 제4의1호, 제4의2호, 제5의1호, 제5의2호, 제9호 및 제10호의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문서번호는 당해 기안문서의 문서번호에 일련 번호를 추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담당자(제1항의 서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조사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급대장(별지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조사원이 교부받은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오기, 훼손 등의 사유로 서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하여 보관하고 해당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수한 서식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폐기"라고 주서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의 녹음 등) ① 조사원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② 녹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관계자에 대한 진술 녹음에 함께 녹음하고, 녹화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에 기재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등

제16조(조사결과의 처리) 감독원장은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규정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권한이 감독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심사·조정 의뢰)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 관련입증자료
3. 기타 심사·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8조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심사조정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심사·조정 및 결과통보) ①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 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처리안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 처리의견의 형평·타당성 여부

②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서류관리

제19조(서류관리) 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1. 사건기록철
2. 조사(실지조사)품의서철
3. 사건수리(접수)부
4.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5.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6.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7.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8.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발급대장
9. 통계철
10. 사건관련 기타 자료

②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제9호의 통계철에 조사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편철하며, 담당사건의 최종처리 후 해당 내역 등을 기록·반영하여 조사관련 각종 통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사건기록철) ① 조사원은 사건기록철에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접수한 사건관련 기록 기타 자료를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입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문답서, 진술서 제외)는 폐기내역과 폐기사유를 명시한 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비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기록철은 본조사 사건기록철에 합건하여 편철 관리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7. 19.>

이 세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건 접 수 인

 2.8cm	수리일자		인
	사건출처 사건번호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20 년 제 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		
	 5cm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 서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발급대장

[illegible]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 작 자 : 가상자산검사와

제작일자 : 2026. 4.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